

Ⅰ 제2회 서울노동권익센터 정기토론회 Ⅰ

# 노동의 시작, 청소년 노동인권은 안녕한가요?

- 일하는 청소년의 실태와 노동인권교육을 중심으로 -

Seoul  
Labor  
Center

일시 : 2015년 11월 27일(금) 15:00 ~ 18:00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서울노동권익센터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프로그램

시 간	주 요 내 용
14:30~	사전등록
15:00~15:10	행사진행 사회: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개회 및 인사말씀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15:10~16:10	사회 :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발표1. 서울의 청소년 노동인권, 현황과 과제 - 발표자 : 류 한 승 (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장) 발표2. 일하는 청소년의 유형분석과 정책지원 방안 - 발표자 : 김 지 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쟁점과 개선방안 - 발표자 : 진 숙 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16:10~16:20	<b>Break Time</b>
16:20~17:10	토론. - 토론자1 : 송유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 토론자2 : 박종훈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사무관) - 토론자3 : 이희신 (서울시 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장) - 토론자4 : 하인호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토론자5 : 이웅 (청소년 노동자, 활동가)
17:10~17:50	종합토론, 플로워 토론, 질의/응답
17:50~18:00	폐회 및 뒷정리



# 목 차

발표문 1.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 현황과 과제 .....	7
발표문 2. 일하는 청소년 유형 분석과 정책지원 방안 .....	20
발표문 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쟁점과 개선방안 .....	28
토론문 1. 청소년 근로권의 교육 현황 및 추진계획 .....	41
토론문 2. 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한계와 미래 .....	44
토론문 3.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	48
토론문 4. 「청소년 노동인권과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정책 방안」 과 서울시의 과제 토론 ...	53
토론문 5. 당사자의 눈으로 본 청소년 노동 .....	79



##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 현황과 과제

류한승 (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

### 1. 들어가며

- 청소년 노동인권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서비스업의 변화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더 열악한 노동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조사결과, 실질적인 개선이 요원한 현장실습 과정에서 죽고 다치는 청소년들, 그럼에도 학교의 교육과정 에 노동기본권 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 청소년노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교육체계 구축도 활발해지고 있음. 특히 진보교육감 당선 이후 광주, 전남, 충북, 충남, 부산 등 각지에서 노동인권교육네트워크와 강사단이 구성되고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또 고용노동부와 교육청,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
- 이 글에서는 서울지역 기관과 단체의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첫째 노동인권교육의 취지에 맞는 교육방식 정착과 제도화, 둘째 청소년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모델과 지원의 중요성, 셋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청소년 노동자의 취약성을 극복할 효과적 조력지원의 필요성, 넷째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정책,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 등 연계사업의 통합적 설계와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임.

### 2. 서울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현황

#### 1)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개괄

- 현행 정규교육은 노동인권 에 대한 내용이 매우 부족하고 부정적인 관점의 서술도 포함되어 있음. 선진국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임. 이에 따라 2007년 노사정위는 “근로자의 권리와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노동교육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냈고, 국가인권위도 2010년 노동인권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교

육부장관에게 권고함.1)

- 또한 청소년노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터에서 열악한 노동조건, 부당하거나 비인격적 대우가 만연함. 현장실습의 경우에도 노동관계법 교육미비로 인하여 인권침해 및 이직률 증가가 나타남. 청소년노동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과 나이에 따른 위계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좌절과 무력감을 심어줌.
- 정규교육 과정에서 노동인권이 경시되거나 결핍된 상황에서 서울지역의 여러 기관, 단체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노동권 보장활동을 해왔으며 교육 내용과 방식도 천차만별인 상황임. 교육의 질과 교육내용,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함 시점임.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간 축적되어 온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함께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 2) 서울시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 현황

-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11월20일 <고졸성공시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그 중 하나로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제시함. 주된 내용은 특성화고 교원 연간 130명에 대해 직업윤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 3학년생 사이버연수 이수(14,646명)하게 하되 사이버연수의 보완책을 마련(T/F 구성 예정)한다고 함. 또 특수분야 산업체 직무연수 개설시 교양과목으로 포함하고 2015년 노동인권교육 매뉴얼(학생용, 교사용)을 개발 및 보급하기로 함.
- 하반기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관 형식으로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운영. 짧은 접수기간에도 불구하고 100학급 교육 계획에 500여학급이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 2015년 노동인권교육 교재제작은 서울시 청소년 권리수첩 제작, 보급으로 대체함.

<표 1>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실천계획 중 노동인권 항목 (금액단위: 천원)

세부 과제	내역	예산	비고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원연수	1강좌 40명	3,000	겨울방학 예정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100학급	13,000	
노동인권교육 학생용 워크북 제작	1종(고)	15,000	권리수첩 발간
노동인권교육 교사용 매뉴얼 제작	1종	8,000	

1) 노사정위, 「일과 직업 및 노사관계에 대한 학교교육 관련 권고」 2007.11.13.  
국가인권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2010.2.4.

### 3)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 올바른 노동가치관 정립 및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운영. 주로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81%) 강사 개인이 작성한 강의안으로 교육. 강의식 집합교육 방식 (1회당 200명 이상)

<표 2>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현황

연도	2014년		2015년 (계획)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인원	150회 24,000명	100,000명	250회 50,000명	150,000명

- 2015년 3월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홈페이지 개설 운영. 주제별, 대상별 맞춤형 표준교재 및 교육컨텐츠 개발과 보급에 중점. 전문가 10명 내외 교재개발위원회 구성 운영하여 5개 주제에 대해 교재 및 동영상 컨텐츠 개발하여 발간, 홈페이지에 등재. (<http://youth.koreatech.ac.kr>)

<표 3>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주제와 내용

주제	내용
올바른 직업관과 노동의 필요성	일과 노동, 그리고 직업 / 직업과 개인, 그리고 사회 / 직업윤리
진로설계와 취업전략	일과 직업 / 나에게 맞는 직업 선택 / 직업세계와 소프트스킬 / 경제발전과 직업의 변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이해	노사관계 / 노사분쟁 / (노사) 분쟁해결 제도 /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예비 취업자를 위한 법률교실 (성희롱 예방 교육 포함)	근로계약의 체결과 계약 해지 / 근로시간 / 임금 / 미성년 및 여성 근로의 보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 예방	산업안전과 재해 / 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보상 / 재해 예방의 중요성

### 4)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교육기획과 학교 교육 진행 : 청소년과 함께 하는 교육은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일할 때 쟁겨야 할 노동인권,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전략, 인권상황 구조적으로 살피기 등을 주력. 비청소년과 함께 하는 교육은 청소년/청소년인권/청소년노동인에 대한 관점 등.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활동가 과정 진행 : 강사가 아니라 인권교육 활동가로서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만드는 것과 청소년노동인권 현실을 바꿔내는데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주력.

- 십대 밀바닥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대회 및 단행본 출간(십대 밀바닥노동 -야 너로 불리는 이들의 수상한 노동세계), 현장실습 면접조사 학생 교사 교육청 노동부 현장실습사업장 동료노동자, 졸업생 등 면접진행, 간담회 진행.

## 5)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서울시는 “희망노동아카데미”(노동정책과)라는 이름으로 노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청소년노동인권교육임. 자치구 통해서 교육 희망기관 신청받고 원하는 교육장소로 강사 파견하는 방식.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105회 7,183명 노동교육 진행. (전체 교육 144회 12,358명 중 58%가 청소년 교육)
- 대부분 고등학교 방문교육. 교육시간은 40분에서 100분 사이, 인원은 최소 10명에서 최대 750명으로 교육의 편차가 큰 편임. (평균 68.4명) 2015년 노동교육은 근로자, 사용자, 청소년 포함 총 16,000명 목표로 진행 중.
- 매년 청소년 노동권리수첩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법 교육 동영상 제작 보급. 연소자용, 청년용, 사업자용으로 총 3종 제작. (청년정책과)

## 6) 서울노동권익센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5년 설립되어 1년차 사업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함.

<표 4>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현황

사업명	계획	집행	주요 내용
강사양성교육	3권역 20회	4권역 26회	4개 권역 기초교육, 광역 심화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80회	187회	교육청, 성북구청 공동주관 포함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과정	.	3기 각 8회	성북구 청소년노동인권 사업
청년 노동인권 프로그램	12회	15회	'나와 노동' '노동인권서포터즈'

###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활동가 과정

- 서남권(강서, 양천, 영등포), 은평, 동대문/성북, 강동 4개 권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동가 기초과정 진행. 이후 지역별 강사단모임 활동,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과 연계.

- 위촉 강사단과 기초과정 수료, 그 외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 대상으로 11월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활동가 심화과정 진행.

<표 5>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활동가 기초과정 프로그램 예시 (동대문/성북)

	주제	내용
1강	인권의 눈으로 노동을 본다는 것 -인권과 노동의 이해/노동을 바라보는 관점	- -동그라미의 비밀
2강	나의 노동인권과 다른 노동자의 인권은 어떻게 만날까? -노동인권의 현주소와 쟁점	-노동인권 상식테스트 -청년노동문제 신데렐라 패러디영상
3강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감정노동/나의 노동인권 돌아보기	- 하루 일과 속 숨은 노동자 찾기 - 조별 프로그램
4강	어렵지 않아요! 판례로 보는 노동인권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 침해 사례, 구조적 한계와 모순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모의 노동위원회 조별 진행
5강	노동인권세상 상상하기 -노동인권이 잘 보장되거나 문제가 잘 극복된 사례	-지역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조별 프로젝트 구상 및 발표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 단순히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키우는데 집중함. 이를 위해 소집단 참여형 교육을 원칙으로 하여 40명 이하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 예산과 인프라의 제약으로 특성화고, 학교밖청소년 우선 접수.
- 2015년 80회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 업무협약(10/22)에 따라 고등학교 123학급 노동인권교육을 공동주관하는 등 12월까지 총 187회 진행 예정.
- 해당지역의 노동인권강사를 우선 섭외. 교육전 사전 강사모임을 통해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맞게 교안 준비. 교육이 끝나면 모든 참가자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평가설문을 작성하고 동시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파악을 위한 6개 문항도 포함하여 설문.

■ 성북구 청소년노동인권 증진사업

- 성북구는 청소년노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5년 4월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5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성북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이에 따라 성북구 관내 특성화고 4개교 3학년 68학급 대상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진행 등을 계획함.
- 성북구인권센터에서 청소년 상담 및 문제해결 역량 강화와 커뮤니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8월~11월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과정 운영. 1~3기 정원 20명으로 총 60명 참여. 11월20~21일 1박2일로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진행. 노동인권에 관심있는 청소년 40여명이 참여하여 청소년 노동인권특강, 모의 노사교섭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함.

- 이후 2016년 청소년노동인권 특강, 청소년 포레 노동인권상담 동아리 육성 및 활동지원,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제정 추진 등을 계획하여 상호 협의 중.

<표 6> 성북구 청소년 포레 노동인권상담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분류	차수	프로그램명	목적 및 활동
문턱넘기	1강	숨어있는 노동찾기: 노동인권 실루엣	노동인권 이해 및 감수성 제고
툭아보기	2강	노동인권 수레바퀴: 우리는 어디로	청소년 노동현황 파악
	3강	노동인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방법1	노동법 살펴보기, 노동인권침해 사례 연구
	4강	노동인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방법2	실제 상황으로 역할극 (실습, 모의노사교섭)
빛장열기	5강	상담의 기본원리와 자세	도움 주는 대화법, 공감능력 높이기
	6강	노동인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방법3	노동인권 관련 기관 탐방
날개짓	7강	청소년 노동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캠페인 활동을 통해 내 친구의 아르바이트를 이해하고 실천 활동을 모색
	8강	모니터링 분석결과 및 소감 나누기	내 친구의 아르바이트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 도출 및 소감 나누기

■ 청년 노동인권 프로그램

- 2015년 7월 5주과정의 청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설. “내일이라도 일하게 될 청년들의 권리찾기 <나와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강연(노동의 이해, 일의 경제학, 노동법 등)과 직접행동 프로젝트 병행. <알바건강 10계명, 카드뉴스 만들기> <감정노동 활짝 인권up 프로젝트> <세대별 여성의 삶과 노동 인터뷰> <서울청년 심야노동 실태조사> <서울 노동체험 원정대> 등 총 6개 직접행동 프로젝트 진행
- <청년 노동인권서포터즈>는 9월17일부터 12월4일까지 11주 동안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싶은 서울거주 20대 대상으로 개설. 매주 한 번의 교육과 프로젝트 활동 병행. 프로젝트로는 아파트경비원, 배달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보조/조사원, 권리구제 가이드맵 조사원 활동 등을 진행. 프로젝트 결합도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지급.

7) 자치구 노동(근로자)복지센터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서울시 4개 자치구에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노동(근로자)복지센터가 설립되어 다양한 노동상담, 교육, 복지사업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도 자체 강사단을 두고 센터별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표 7> 자치구센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계획

지역	사업명	대상	횟수	예산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중·고등학생	50회	1,080만원
노원노동복지센터*	맞춤형교육(노동인권교육)	중·고(특성화고 포함)	80회	1,780만원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청소년 노동인지교육	초·중·고생	30회	956만원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특성화고생	40회	885만원

\*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248만원 별도 편성

### 3. 청소년노동 권리침해와 구제

#### 1) 고용노동부 안심알바신고센터

- 안심알바신고센터는 학생들의 신고, 상담을 받기 쉬운 학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0년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시범사업으로 시작. 인천고교 12개소 설치 운영. 2011년 전국 103개 설치, 2012년 111개소 추가 설치. 2015년 5월 현재 전국에 242개소, 서울에는 69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안심알바신고센터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도 없어서 사실상 기능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2013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알바신고센터 225곳 중 205곳은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2013년 상반기 전체 신고 건수는 26건에 그침)
- 사건처리 방식에서 “절차 간소화, 찾아가는 상담”으로 홍보하지만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 접수 등 기존 처리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 운영매뉴얼 등을 볼 때 청소년과 청소년노동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함.
- 근로감독관의 청소년노동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사건해결에 큰 영향을 미침. 청소년이 임금체불 등 권리침해나 부당대우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강제출두를 요구하거나 사용자에게 진정인의 정보를 누설하여 사업주가 압력을 행사, 청소년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거나 임금부분이 해소되면 무조건 취하를 요구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표 8> 서울지역 안심알바신고센터 설치현황 (총 69개소)

지청별	서울청	강남지청	동부지청	서부지청	남부지청	북부지청	관악지청
		20	2	5	1	4	33
설치 장소별	특성화고		대학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	노동복지센터	
	39		17	6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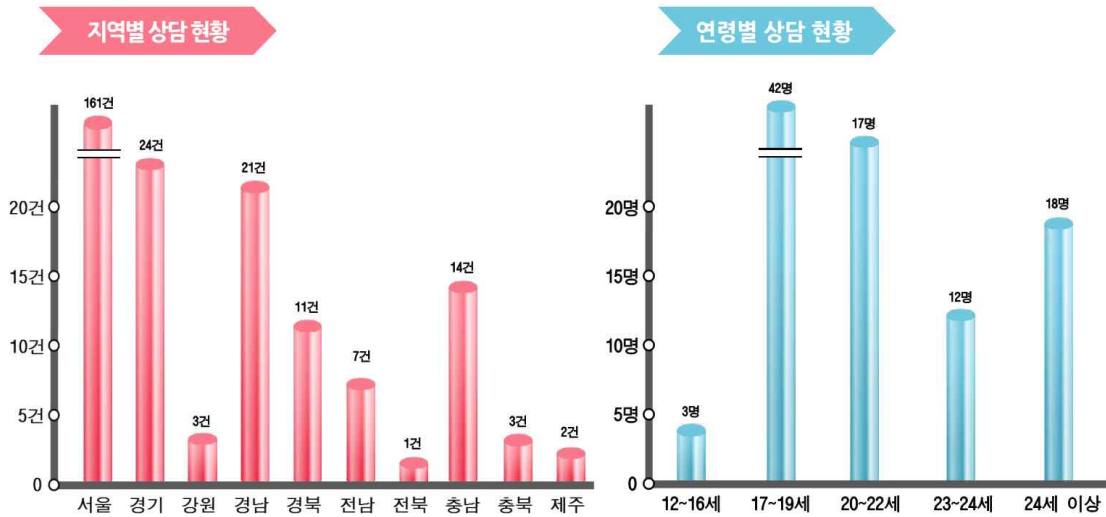
## 2) 서울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

- 서울시는 2014.4.10.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추진계획’ 발표.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포함 5개소 운영, 종합센터 역할 / 실태조사 및 노동법교육, 캠페인 / 전문노무사 배치하여 체계적 관리 계획. (청년정책과)
- 현재 4개 자치구센터에 알바지킴이 센터별 1인(서대문 2인) 배치하여 관련 사업 기획 및 진행. 실질적으로 상담, 교육은 해당 자치구센터와 통합운영. 청년아르바이트 권리보호지킴이 양성 (서대문) 청년노동아카데미, 청소년노동인권캠프(노원) 청소년알바지킴이 양성 (성동) 등 사업 진행
- 권리보호센터 담당 알바 지킴이는 올해의 경우 4월~12월까지만 근무 가능, 재고용 불가. 신규담당자가 업무를 배우는 시간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형식적 운영을 벗어날 수 없음.
- 사실상 관리운영이 자치구센터에 맡겨져있고 사업범위도 해당 자치구로 제한됨. 서울시 차원의 기획과 고유한 사업영역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함.

## 3)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고용노동부, 알바천국, 알바몬, 한국공인노무사회가 2015년5월19일 업무협약 체결. 주요 사업으로 (1)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 내실화 및 구제 지원 (2) 기초고용질서 준수 공동 캠페인 추진 (3) 표준근로계약서 및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 2015년6월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공동으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개설. 전화 (1644-3119), 온라인(youthlabor.co.kr), 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으로 상담경로 다변화, 공인노무사회 사무국이 1차 상담 후 노무사와 매칭시켜주는 방식.
- 설립이후 한 달간 총 상담 247건 중 서울지역이 161건에 이르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폭넓게 존재함을 확인. 상시적 노무사 지원이 가능해진 점은 상당한 진전이지만 현재로선 옴부즈만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머물러 있음.
- 공인노무사회가 상담 및 노무사 지원을 담당하고 알바천국, 알바몬 등이 캠페인과 홍보사업을 담당하는 형식.

[그림 1] 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지역별·연령별 상담 현황



## 4. 시사점과 과제

### 1) 맞춤형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 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로 수강규모임. 54.8%가 100명 이상 수업 진행. 교사의 68.9%가 노동인권 수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노동인권 관련 자료를 꼽음.<sup>2)</sup>
- 단순 노동법 강의가 아니라 노동인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질서, 구조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 사이버교육이나 대규모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청소년 맞춤형, 소집단 참여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모델 확산하고 인프라 구축.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정기적 지속적으로 학교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이 필요. 우선적으로 서울시 76개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 일반고등학교, 중학교로 확대하기 위한 연차별 목표 설정과 그에 맞게 강사단, 교안교재 등의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권역별 전문가 양성, 지원체계를 만들고 강사단이 지역활동, 상담과 연계되도록 운영.

### 2)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제도화방안 추진

2) 「청소년노동에 대한 교사인식 설문조사 보고서」. 2012.

- 교육청, 서울시 등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제반 사업이 체계적,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
- 그간 서울지역의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성과와 현황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실시.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워크숍 개최.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여론 조성.
-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시의 지원, 역할, 의무 규정.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노동인권교육의 방법과 원칙, 계획.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수행기관 지정 등. 노동인권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들 수 있음.
- 예컨대 청소년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10인미만 영세사업장은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가장 성희롱, 성폭력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어려움. 이 경우 지역상공회, 협회 등과 협력하여 지자체에서 10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고 :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조례 추진 현황

- 2015. 7. 28 대전광역시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정
- 2013. 5. 29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
- 2015. 6. 17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그 외 성북구 조례안 준비중. 2014.7.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은수미 외 13인)

### 3) 청소년 당사자의 주체화와 임파워먼트

- 청소년의 경우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나 권리구제 포기하는 사례 빈발. 정확한 정보 부족, 주위의 만류, 근거없이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협박(예: 손배청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 등 높은 진입장벽에 부딪치게 되고 수동성과 무기력을 학습하게 됨. “착한 어른이 나쁜 어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주체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함.
- 노동인권교육이 ‘교실 안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청소년 스스로의 역량강화로 이어져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되어야 함. 현재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청년 노동인권활동가 프로그램’, 성북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중인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등을 모델로 개발하고 주체 형성 프로그램의 확산·보급을 추진.
- 정기적인 노동인권 홍보와 캠페인, 인권축제 부스 등. (광주, 인천 사례) 청소년 노동인권 동아리 운영, 노동인권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등.
- 청소년 노조,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및 네트워크 지원도 필요함. 청소년유니온, 알바노조를 비롯하여 청소년노동, 인권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임.

공모사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 당사자단체를 지원.

- 예컨대 서울시는 청년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민생호민관> 사업을 운영. 민생현장에서 피해상담 지원, 실태조사 및 교육을 통해 민생침해를 예방, 전문성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5명을 선발하여 9개월간 주30시간 근무.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는 2015년 7월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을 운영. 대학가와 시내 주요 상가지역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가산수당, 주휴수당 지급, 지각·퇴직 등 근로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노동조건과 폭언 폭행 등 인권유린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역에서 시도. 예컨대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노동시장의 “노동인권 커뮤니티 맵”을 만드는 사업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커뮤니티 맵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문화나 지역의 이슈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하는 과정을 의미함.

#### 4) 청소년 노동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력지원 체계 구축

- 개별 근로관계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종속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부당대우, 권리침해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조건 통보, 고압적 태도에 의한 암묵적 동의. 또한 취약한 근로감독과 낮은 벌칙수준으로 인해 상습적 법위반을 방지, 억제하지 못하고 갈수록 기초 고용질서가 교란되고 있는 상태임.
- 서울시가 조력지원에 나서면 ① 신속한 처리 해결이 가능하여 절차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② 사업주에게는 압박 및 경고효과가 발생하며, ③ 부당대우,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이 바뀌므로써,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전반의 충격과 개선효과가 기대됨.
-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상담의 충실도 강화도 중요. 옴부즈만 방식이 아닌 권리구제 전 과정에 대한 직접 맞춤형 지원방식이 필요함. 전문인력이 적정 수준의 사건을 담당할 경우 (노무사 1인당 10건 내외) 충실한 상담이 가능해짐. 이 경우 내담자는 심리적 안정과 부담 경감,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전반적 권리침해에 대한 이해,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와 적절한 조언을 통해 권리찾기에 나설 의지와 용기를 얻게 됨.
- 서울시의 조정중재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 유형 중 법률적 무지나 무관심으로 인한 위반 사례 (법 무관심 유형),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위반 사례 (법준수 기대감소 유형) 다수 존재. 또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당사자 간 감정적 대립으로 분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기관의 밀도높은 중재 조정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조속한 해결 가능.
- 집단진정, 기획소송 등 효과적 구제수단 활용이 필요함. 제도적 미비를 이용하거나 법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탈법 사례 등에 대해서 개별 대응이 어려울 경우 법률전문가의 기획과 참가자 모집을 통해 집단진정, 기획소송 등 적극적인 구제수단 모색이 가능.

## 5) 예방적, 통합적 사업 추진

- 임금체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사업주의 법률적 무지나 준수의지 부족, 노동자의 정확한 정보 부족이 문제가 되는 만큼 사전적이며 지속적인 예방 위주의 정책도 수반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당사자들의 권리보장 활동 활성화가 필요함.
- 청소년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 모델 발굴이 필요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 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에서 직업체험을 겸한 모범적 청(소)년 일자리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 확산. 청년,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생활임금과의 차액분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도 고려할 수 있음.
- 건전한 청(소)년 일자리 창출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아르바이트 박람회도 고려해볼 수 있음.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를 소개, 홍보하고 노동관계법 규정을 준수하는 믿을만한 지역사회 사업장의 참가를 유도하여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소)년이 신뢰할만한 일자리를 얻는 장. 기초자치단체, 서울시 교육(지원)청, 지역상공회와 청소년시설 등이 함께 기획 협력하고 기존의 진로직업체험박람회와 연계하여 운영.
-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재 서울시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가 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도록 연계를 추진하고 이 조사가 실제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 추진. 예컨대 (가칭)“아르바이트 청정지대” 실현을 목표로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장기 개선계획 수립과 꾸준한 조사, 감독으로 모범적인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관행 정착. 모델 확산 추진.
- 각종 아르바이트 연구조사에서 청(소)년 대상 위법·부당한 노동환경으로 꼽히는 3대 사안으로 ①근로계약서 작성/교부, ②서약서 강요 ③휴식권 보장 문제를 들 수 있음. 노조, 지역사회단체, 관련기관 등이 함께 3대 권리침해 사안 집중 캠페인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가 불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회사 곳곳에 ‘성희롱이 없는 회사’라는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이 방법은 노동자, 고객, 외부인 등 기업의 성희롱 예방 인식을 확고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짐. 한국에서도 2013년 5월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의 고객 등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조력지원 사업과 예방적 홍보/교육사업을 통합적으로 기획, 운용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부서간 칸막이 현상이나 중복사업의 폐해를 방지하고 부족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5. 몇 가지 사족

- 유휴청년층 왜 늘어나는가?
- 한국의 유휴청년층(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은 80%이상이 일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 조건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면서 정서적으로 탈진됨. 대부분 취업과 실업, 구직포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음.<sup>3)</sup>
- 유휴청년층은 나이에 대한 중압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우울감과 고독감도 40%로 보통 수준 이상임. 반면 적절한 심리적 지원이나 대인관계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심리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함.
- 아르바이트 시장 변화와 청소년노동
- 서비스업과 영세사업장 일반의 노동조건과 인권 수준의 문제

---

3)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 니트 실태조사”

## 일하는 청소년 유형 분석과 정책지원 방안<sup>1)</su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경>

### 1 일하는 청소년의 유형과 정책지원에 대한 기본 이해

#### ○ 일하는 청소년의 유형

- ▶ 분류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음.

예1)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별을 기준으로 남자 청소년 vs 여자 청소년 또는 연령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청소년 vs 18세 이상 청소년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음. 정책대상자에 따라 연소자보호에 관한 법적 최소기준이 준수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예2) 일하는 업·직종을 기준으로 한다면, 청소년 비율이 높은 음식점·식당, 편의점, 뷔페·웨딩홀 등 표준산업·직업분류가 아닌, 구체적인 업·직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유형화 할 수 있음. 최근 새롭게 포착되고 있는 청소년 고용률이 높은 업·직종은 주문상당·접수 콜센터, 물류택배 상·하차 등임.

예3) 일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면, 주중과 주말에 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와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예4) 일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생계 또는 생활을 위한 경제적 목적의 경우와 추가적인 소비나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 본 고에서는 ‘일하는 목적’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서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일하는 청소년의 유형을 세 가지(①생계·생활을 위한 경제적가 아닌 비경제적 사유를 갖는 경우, ②생계·생활을 위한 경제적 사유를 가지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③생계·생활을 위한 경제적 사

1) 본 고의 내용은 2014년 여성가족부 정책연구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의 내용을 발췌·재구성 한 것임.

유를 가지면서 부모와 비동거 하는 경우)로 구분하였음.

- ▶ 본 고에서 일하는 목적과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주목한 이유는 최근 문제제기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밀바닥노동’과 ‘장시간노동’의 문제들이 일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생계·생활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취약계층 청소년들, 특히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소년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 일하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도구 및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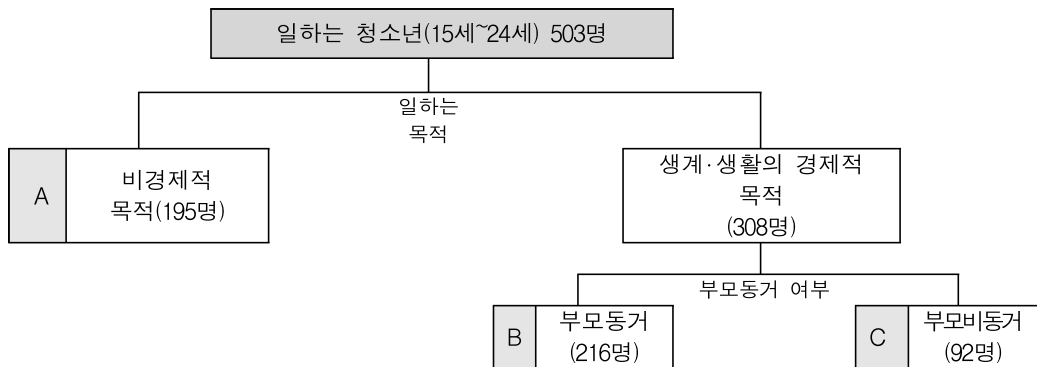
- ▶ 일하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정책은 「근로기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음.
- ▶ 추진되고 있는 정책도구 및 수단을 구분해보면 크게 ①예방·교육, ②인식제고 및 홍보, ③관리·감독 및 규제, ④발굴·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정책대상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넓은 범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과 좁은 범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정책으로 구분됨.

정책도구수단 \ 정책대상	보편적 정책	선별적 정책
예방·교육	○	○
인식제고·홍보	○	
관리·감독 및 규제	○	○
발굴·지원	○	◎

- ▶ 본 연구에서 구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대체로 예방·교육, 인식제고·홍보, 관리·감독 및 규제의 보편적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 많고, 경제적 목적으로 일하면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자립생활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발굴·지원을 통한 선별적 정책이 필요한 이들이 다수임.
- ▶ 현행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은 보편적으로 일하는 청소년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 목적으로 자

립생활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가장 취약한 여건 하에 있는 노동법상의 근로권익보호는 물론 이에 더하여 직업훈련이나 복지서비스로의 연계까지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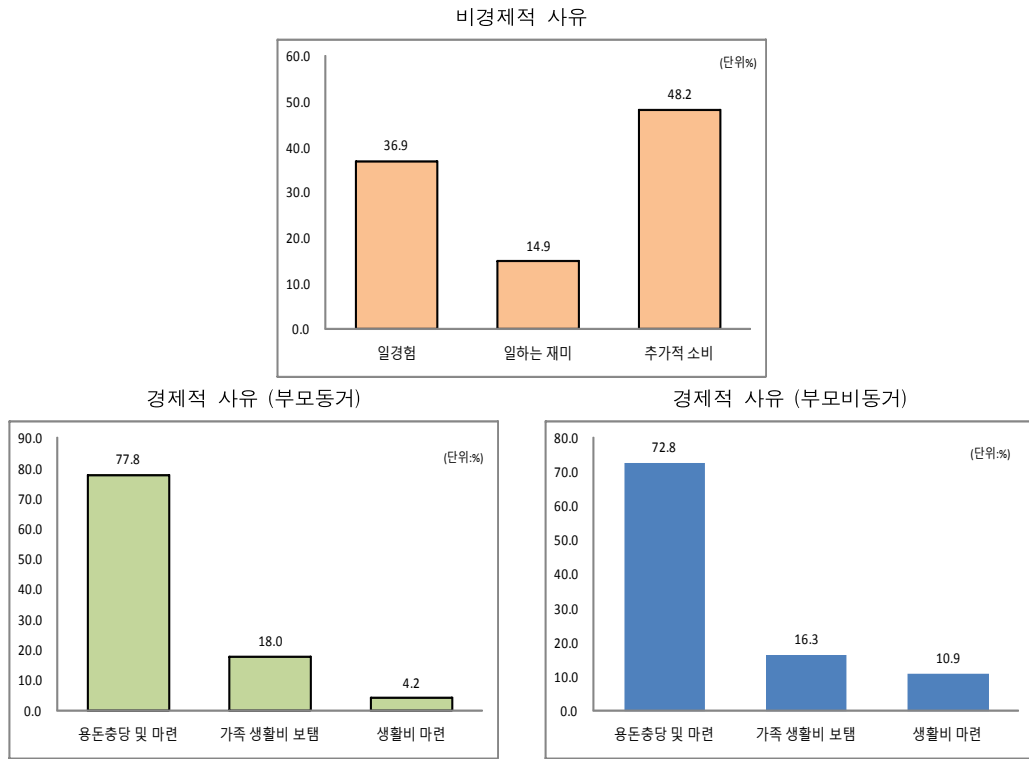
○ 자료에 대한 이해



**2 일하는 청소년 유형별 비교**

○ 일하는 목적 및 사유

- ▶ 비경제적 목적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은 경험이나 추가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음.
- ▶ 경제적 목적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은 용돈충당의 사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가족생활비에 보태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비율이 낮지 않음. 특히, 부모비동거 청소년들의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한 사유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1】 일하는 목적 및 사유

○ 첫 아르바이트 시작 당시의 연령

- ▶ 평균 17.2세에 일 경험이 있음. 전체의 10.9%는 14세 이하 연령 때, 일을 경험함.
- ▶ 경제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며 부모와 비동거하는 청소년의 경우 14세 이하 연령 때, 일을 시작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평균 첫 아르바이트 시작 연령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

표-1 첫 아르바이트 당시 연령

(단위: 명, %)

특성		구분	전체	14세 이하	15~18세	19~24세	평균 (표준편차)	T/GLM-test
일하는 청소년 유형	비경제적사유		195 (100.0)	23 (11.8)	116 (59.5)	56 (28.7)	17.2 (2.3)	1.21
	경제적사유	부모동거	216 (100.0)	20 (9.3)	136 (63.0)	60 (27.7)	17.4 (2.2)	
		부모비동거	92 (100.0)	12 (13.0)	52 (56.5)	28 (28.5)	17.0 (2.3)	

## ○ 일 경험의 총 기간

- ▶ 첫 일 이후 현재까지 일했던 총 기간을 비교해 보면, 전체 평균 20.5개월임.
- ▶ 경제적 목적으로 일을 하며 부모와 비동거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평균 26.3개월로 상대적으로 긴 근로기간을 가짐. 특히 2년 이상의 장기간 근로경험을 갖는 비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임.

표-2 일 경험의 총 기간

(단위: 명, %, 개월)

분 특성	구	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평균 (표준편차)	T/GLM- test	
전체		503 (100.0)	42 (8.4)	82 (16.3)	65 (12.9)	132 (26.2)	89 (17.7)	93 (18.5)	<b>20.5</b> <b>(18.7)</b>		
일하는 청소년 유형	비경제적사유	195 (100.0)	19 (9.7)	36 (18.5)	25 (12.8)	51 (26.2)	32 (16.4)	32 (16.4)	19.2 (18.5)	<b>5.67**</b>	
	경제적 사유	부모 동거	216 (100.0)	22 (10.2)	35 (16.2)	27 (12.5)	63 (29.1)	33 (15.3)	36 (16.7)		19.1 (17.4)
		부모 비동거	92 (100.0)	1 (1.1)	11 (11.9)	13 (14.1)	18 (19.6)	24 (26.1)	25 <b>(27.2)</b>		<b>26.3</b> <b>(20.9)</b>

## ○ 일 경험 상위 5개 업·직종

- ▶ 대체로 청소년들이 집중되어 있는 편의점, 음식점·식당·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은 일하는 청소년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임.
- ▶ 비경제적 목적으로 일하는 경우 뷔페연회장의 순위(3순위)가 높은 반면, 경제적 목적으로 일하는 청소년들 중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 제조·가공/포장·조립의 일, 즉 공장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은 순위(3순위)를 차지함.

표-3 일하는 청소년 유형별 현재 아르바이트 상위 5개 업·직종

(단위: %)

구분	전체	비경제적 사유	경제적 사유	
			부모동거	부모비동거
1순위	편의점 (14.9)	편의점 (19.0)	편의점 (13.9)	음식점·식당·레스토랑 (13.0)
2순위	음식점·식당·레스토랑 (11.9)	음식점·식당·레스토랑 (11.3)	음식점·식당·레스토랑 (12.0)	편의점 (8.7)
3순위	패스트푸드점, 사무보조 (5.0)	뷔페연회장 (5.1)	사무보조 (6.5)	<b>제조·가공/포장·조립</b> (7.6)
4순위	PC방/DVD방/노래방/만화방 (4.2)	패스트푸드점,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분야 (4.1)	패스트푸드점 (6.0)	사무보조, PC방/DVD방/노래방/만화방, 기타 서비스 (5.4)
5순위	베이커리/아이스크림 (4.0)	사무보조, PC방/DVD방/노래방/만화방, <b>카페, 의류잡화/가전휴대폰/화장품뷰티/사무문구용품 / 가구침구소품 매장, 영화·공연·전시</b> (3.1)	베이커리/아이스크림, 카페 (5.1)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아이스크림, 대형마트/소핑몰/아울렛/백화점 (4.3)

○ 근속기간, 주당 근무일수 및 주당 근무시간

- ▶ 장시간·장기간 일 경험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의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 주당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을 비교한 결과, 평균 9.6개월 근속하고, 주당 4.3일 일하며, 주당 30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일하는 청소년 세 집단 간 비교를 해보면, 경제적 목적으로 일하며 부모와 비동거하는 청소년들의 주당 근무일수(4.8일)와 근무시간(37.3시간)이 가장 길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드러남.

표-4 일하는 청소년 유형별 근속기간, 주당 근무일수 및 주당 근무시간

특성	구분	비경제적사유	경제적사유		전체 평균	GLM-test
			부모동거	부모비동거		
근속기간 (개월)		10.6 (13.0)	9.0 (10.1)	8.9 (10.7)	9.6 (11.4)	1.24
주당 근무일수 (일)		4.1 (1.6)	4.2 (1.6)	4.8 (1.3)	4.3 (1.6)	8.41***
주당 근무시간 (시간)		27.7 (16.7)	28.9 (15.7)	37.3 (17.8)	30.0 (16.8)	11.47***

○ 일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경험(상위 5개)

- ▶ ‘손님(고객)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들었다’는 경험이 비경제적 목적으

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일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부당행위 5순위 안에 없으나, 경제적 목적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3순위에 위치함. 이는 경제적 목적으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 함.

표-5 근로청소년 유형별 부당행위 경험(상위 5개)

구분	근로청소년 유형			전체
	비경제적 사유	경제적 사유		
		부모동거	부모비동거	
1위	일하기로 약속한 날 이외 요일이나 시간에 근무를 요구받았다.	일하기로 약속한 날 이외 요일이나 시간에 근무를 요구받았다.	약속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초과 근무를 하게 하였다.	일하기로 약속한 날 이외 요일이나 시간에 근무를 요구받았다.
2위	약속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초과 근무를 하게 하였다.	약속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초과 근무를 하게 하였다.	일하기로 약속한 날 이외 요일이나 시간에 근무를 요구받았다.	약속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초과 근무를 하게 하였다.
3위	1주일 15시간 이상, 1주일을 개근하였으나 유급휴일을 못 받았다.	<b>손님(고객)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들었다.</b>	<b>손님(고객)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들었다.</b>	손님(고객)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들었다.
4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시급을 받았다.	1주일 15시간 이상, 1주일을 개근하였으나 유급휴일을 못 받았다.	1주일 15시간 이상, 1주일을 개근하였으나 유급휴일을 못 받았다.	1주일 15시간 이상, 1주일을 개근하였으나 유급휴일을 못 받았다.
5위	쉬는 휴게시간이 없었다.	쉬는 휴게시간이 없었다.	쉬는 휴게시간이 없었다.	쉬는 휴게시간이 없었다.

### ○ 일 경험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인식

- ▶ 청소년기 일 경험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은 적성과 흥미 또는 진로 및 직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과 사회성 발달, 그리고 자립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 ▶ 비경제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이와 같은 일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인 사유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가 낮음.

표-6 일하는 청소년 유형별 일 경험의 긍정적 측면에 관한 인식

(단위: 점)

분 구	근로청소년 유형			전체	GLM-test
	비경제적 사유	경제적 사유			
		부모동거	부모비동거		
내 적성과 흥미를 찾았다.	4.5 (2.7)	3.3 (2.6)	3.5 (2.8)	3.8 (2.7)	11.78***
내 희망 진로·직업을 갖게 되었다.	4.5 (2.7)	3.0 (2.6)	3.0 (2.8)	3.5 (2.7)	10.99***
아르바이트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6.1 (2.5)	5.4 (2.8)	5.2 (3.2)	5.6 (2.8)	4.27*
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내가 벌어서 쓴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6.9 (2.2)	6.4 (2.6)	6.2 (3.0)	6.6 (2.5)	3.3*

### 3 일하는 청소년 유형별 지원 방안

#### ○ 비경제적 목적의 일하는 청소년 지원

- ▶ 현장 중심의 직업체험 및 인턴쉽 프로그램의 확대 및 활성화

#### ○ 경제적 목적의 일하는 청소년 지원

-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관련 법조항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 학교 중심의 찾아가는 노동교육 → 청소년복지시설 및 자립생활관 등으로 확대 실시
- ▶ 취업사관학교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연계지원 활성화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쟁점과 개선방안2)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 1.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쟁점

### 1)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황

학교에서 실시되는 노동인권교육의 형태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느냐에 따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교육주체에 따라 교육양태가 매우 달라질 것이며, 교육대상, 교육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표 1> 노동인권교육 유형과 내용

기준	유형	교육 양태	수행 정도
교육주체	교사	정규 교과과정이나 창의체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교육	△
	시민사회단체	노동인권교육 강사진을 구성하여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급별로 교육	○
	전문가	노무사 등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 형식으로 교육	△
	학부모	일상적인 대화 등 가정 교육	×
교육대상	특성학교 학생	현장실습 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심	○
	일반고 학생	수능 이후 극히 드물게 진행	△
	초중학교 학생	일부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교육	×
	학교밖 청소년	가장 다수의 청소년이 노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교사 등 교직원	소수 인원에게 대한 4시간 정도의 연수 프로그램	△(x)
	학부모	학부모 교육 필요성조차 공유 안 됨	×

2) 이하 내용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2015년 연구한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내용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다.

기준	유형	교육 양태	수행 정도
교육방식	집체교육	학년 전체 학생들이 대강당 등에서 초청 강사 교육 내용 청취	○
	비디오 방송교육	초청 강사가 한 교실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비디오를 통해 타교실 학생 시청	○
	사이버교육	한국고용노동연수원의 사이버 학습 자료 시청	○
	학급별 강사교육	노동단체 강사들이 학급별로 교육	○
	교과과정과 결합	교사들이 수업 교과과정의 내용과 결합	△

출처: 진숙경 외(2015)

우선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사례와 수능 이후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일반고등학교 사례,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하나의 과목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사례, 그리고 일찍이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의 틀을 벗어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캠프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성화고의 경우 노동인권교육이 산업체현장체험<sup>3)</sup>, 현장실습<sup>4)</sup>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전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경우 2010년 10월5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 제30조<sup>5)</sup>에 따르면 경기도내 모든 학교 특히 특성화고 고등학교 현장실습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의 A정보고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나가기 전 3년 동안 총 34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로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제작한 사이버학습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 강사초빙 집체 강의나 취업 담당 교사들의 현장실습 전 집중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 현장에 나가기 전 알아야할 기초적인 지식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수원시일자리센터로부터 위탁을 받아 특성화고에 멘토프로그램, 근로기준법 및 성차별, 성희롱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의뢰하여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급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진행하는 노동인권교육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교육과 직장내성희롱교육으로 나누어 2교시에 걸쳐 진행된다. 각 반마다 강사들이 들어가 모둠을 형성하여 학생 참여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학기 중 다루어야 할

- 3) 산업체 현장체험은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탐색,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견학, 산업체 인사특강,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4) 현장실습은 3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해당직업분야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기업경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산업체 파견 및 실습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5) 제30조(학교내 인권교육·연수)①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학기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아라바이트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업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부 관심 있는 교사들은 수업 내용과 연관이 있을 때 교과과정에서 녹아들어가는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다른 교과 내용 전달에도 빠듯한 시간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B고등학교의 경우는 혁신학교로서 노동인권교육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에 2013년과 2014년 두 해에 걸쳐 진행되었다. 실제 수능 이후 이 학교 학생의 절반가량이 편의점, 식음료점, 커피전문점, 노래방, 화장품가게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첫 해에는 희망자에 한 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4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고3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시간 정도 각 학급에 외부 강사들이 들어가 교육하였다.

B고가 일반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강사 초청 노동인권교육이 가능했던 것은 고3 수능 이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혁신학교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학교 지원금이 있었고 그로 인해 노동인권교육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편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육 자체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 될지는 미지수다. 관리자들에 따라 교육 실시 여부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한 여성 교사의 제안을 관리자들에 수용하였으나, 교장이 바뀐 2015년 현재에도 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알바생들의 비중이 높은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다른 강좌들에 비해 높은 편이나 수능 이후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는 수능 이후 통제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사회교육법(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립한 대안학교인 C실업고는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야간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3년부터 주간으로 전환하였다. C실업고는 지역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동이랑(=노랑)’과 함께 2014년부터 일회적인 노동인권교육에서 벗어나 한 학기 한 과목을 기획하여 교육하고 있다. 교과내용은 노동에 대한 일반 개념부터 시작하여 일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해고나 산업재해, 성희롱에 관한 수업을 실시하고, 모의 단체교섭을 구성하여 노동3권의 문제도 다루고 있으며, 직업체험도 노동인권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심지어 한 강좌에 3~4명의 보조강사가 함께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의 모둠 수업을 돕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개별 학교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실천과 결합하지 않은 교육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내 교육과 달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캠프” 하루 집중교육도 주목할 만하다. 2011년 경기도 학생노동인권조례가 통과되면서 군포·의왕·안양 등에서 노동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사들과 지역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안양군포의왕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sup>6)</sup>를 결성하였고, 네트워크에서 2012년 11월 17일에 청소년 노동인권캠프를

6) 2013년 군포의왕인권교육연구회, 당동청소년문화의 집, 인생나자작업장, 군포시 청소년쉼터 하나

기획 진행하였다. 이후 매년 캠프를 지속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과 중학생들도 함께 진행하였으나 학생들간의 수준의 차이로 인해 2014년부터 고등학생으로 제한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는 캠프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더 많이 참석하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 시간에 알바로 바빠 참석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 2)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내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295명의 답변 내용을 종합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인지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알고 있다는 답변이 16.0%임에 비해, 모른다는 부정적 답변은 32.8%로 2배 정도 더 많았다. 초·중·고 민주시민교과서 모두 노동인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교원은 노동인권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제임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과서 개발 등 독보적 행보를 걸어온 경기도교육청의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표 2> 민주시민교육으로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인지 (단위: 명, %)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잘 안다	많이 안다	평균(SE)	전체
초등학교	120 (4.14)	900 (31.06)	1,391 (48)	392 (13.53)	95 (3.28)	2.81 (0.01)	2,898 (100.00)
중학교	63 (4.06)	419 (27.03)	832 (53.68)	197 (12.71)	39 (2.52)	2.83 (0.02)	1,550 (100.00)
일반고	45 (3.28)	392 (28.61)	747 (54.53)	162 (11.82)	24 (1.75)	2.80 (0.02)	1,370 (100.00)
특성화고	6 (1.75)	70 (20.47)	187 (54.68)	67 (19.59)	12 (3.51)	3.03 (0.04)	342 (100.00)
종합고	4 (4.17)	17 (17.71)	55 (57.29)	19 (19.79)	1 (1.04)	2.96 (0.08)	96 (100.00)
기타	4 (10.26)	7 (17.95)	21 (53.85)	5 (12.82)	2 (5.13)	2.85 (0.13)	39 (100.00)
전체	242 (3.84)	1,805 (28.67)	3,233 (51.36)	842 (13.38)	173 (2.75)	2.83 (0.01)	6,295 (100.00)

둘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비중은 약 27%로 낮은 편이지만,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로, 광정동청소년문화의 집, 군포탁틴내일 등으로 참가단체가 확대되었다.

대해서는 다른 질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고,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교사들 중 대다수가 교육 후 학생들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동인권교육이 현재의 상태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지난 1년간 노동인권 교육 실시 여부 (단위: 명, %)

	없다	있다	전체
초등학교	2,165 (74.71)	733 (25.29)	2,898 (100.00)
중학교	1,135 (73.23)	415 (26.77)	1,550 (100.00)
일반고	981 (71.61)	389 (28.39)	1,370 (100.00)
특성화고	220 (64.33)	122 (35.67)	342 (100.00)
종합고	62 (64.58)	34 (35.42)	96 (100.00)
기타	28 (71.79)	11 (28.21)	39 (100.00)
전체	4,591 (72.93)	1,704 (27.07)	6,295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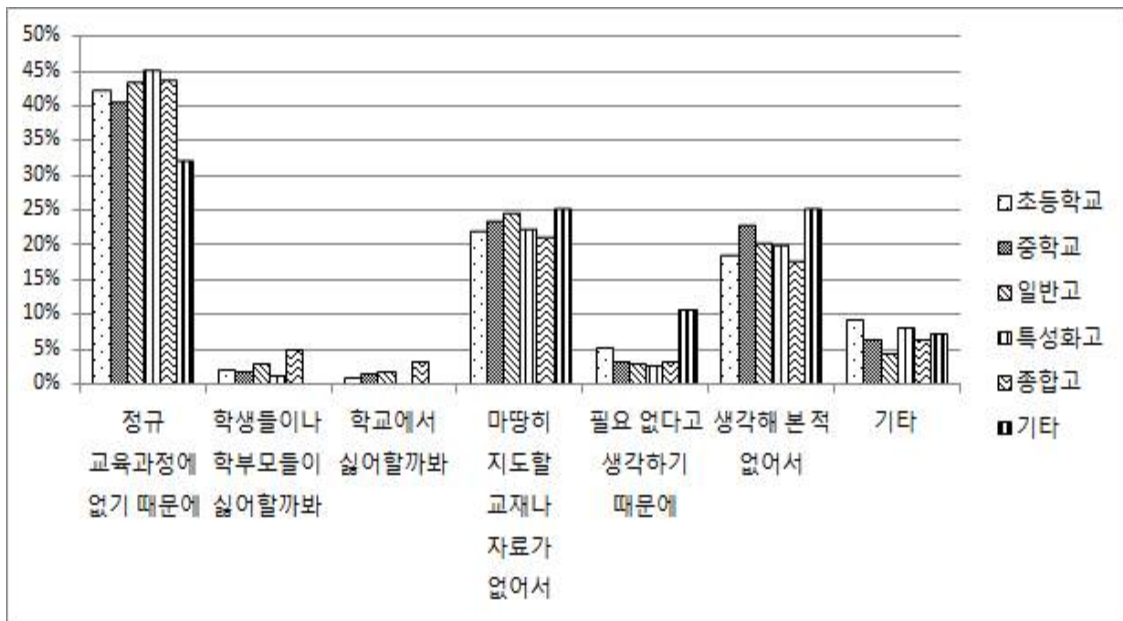
셋째, 노동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제도적 문제(정규 교과과정에 없기 때문)나 교사들의 관심과 역할(관심이나 의지 부족, 담당자 부재) 등에서 나오고 있어, 향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 빈도(%)

	학생들이 미래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어서	아르바이트 또는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학생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기타	전체
초등학교	335 (45.7)	9 (1.23)	339 (46.25)	25 (3.41)	25 (3.41)	733 (100.00)
중학교	175 (42.17)	15 (3.61)	202 (48.67)	8 (1.93)	15 (3.61)	415 (100.00)
일반고	183 (47.04)	23 (5.91)	159 (40.87)	8 (2.06)	16 (4.11)	389 (100.00)
특성화고	45 (36.89)	45 (36.89)	28 (22.95)	3 (2.46)	1 (0.82)	122 (100.00)
종합고	16 (47.06)	8 (23.53)	10 (29.41)	0 (0)	0 (0)	3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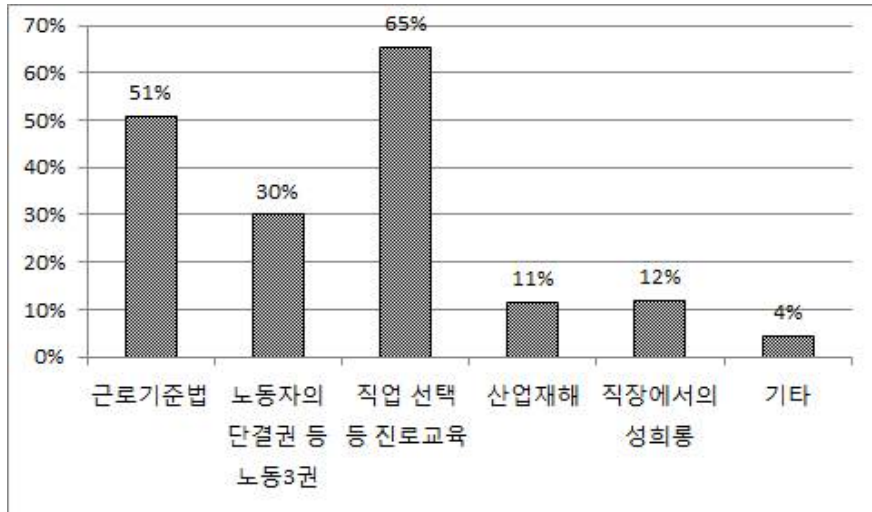
	학생들이 미래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어서	아르바이트 또는 현장실습을 나가려는 학생들이 있어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학생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기타	전체
기타	7 (63.64)	1 (9.09)	3 (27.27)	0 (0)	0 (0)	11 (100.00)
전체	761 (44.66)	101 (5.93)	741 (43.49)	44 (2.58)	57 (3.35)	1,704 (100.00)

[그림 1] 노동인권교육 미 실시 이유 - 전체 - 학교급별



넷째,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나, 실제 노동인권교육 내용은 여전히 진로교육(65%)과 근로기준법(51%) 등 실무적인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노동의 가치와 노동3권 등을 포괄하여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림 2] 노동인권교육 내용 (복수응답 가능) - 전체



## 2.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선방안

### 1) 정책적 대안

첫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실행 계획 및 예산 배정 등 구체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청소년 알바생의 증가와 현장실습생들의 인격모독이나 탈법적인 노동 실태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매우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과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천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 배정 등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2015년 하반기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약 5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가 마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이에 근거하여 본예산 확보와 이에 적절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 뿐 아니라 청소년 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활동을 위해 가칭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조례’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가 나서서 청소년 노동 인권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적인 노동인권교육 실현을 위해 교사 및 외부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관리자 및 교사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외부 전문 강사들과의 꾸준한 연계와 지속적인 강사 역량 강화 방안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외부강사를 신선해 하는 거 같아요. 학교선생님은 맨날 같은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요” (특성화고 K교사 인터뷰)

“학교선생님은 포괄적으로 얘기해주시는데 강사님들이 더 심도 있게 이야기 해주셔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특성화고 K학생 인터뷰)

셋째, 노동인권교육이 알바생이나 현장실습생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제한적 사고를 벗어나 미래의 “일하는 자들”의 시민의식 고양 차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노동을 통한 임금소득으로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와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구현하고 노동조건을 보호받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진로 직업 교육과 연결하여 노동인권교육이 폭넓게 자리 잡아 나가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유학기제 도입을 계기로 확산 가능성을 클 것으로 보인다.

“제가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만일 그 전에 노동인권교육을 받았으면 알바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 거 같아요.”(특성화고 K학생 인터뷰)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소리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인권교육은 단지 노동자가 될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고용해야 할 고용주인 사용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진로 직업교육 차원에서 주요하게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진로 직업교육은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노동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켜나갈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의 불모지로 보이는 초·중학교에서도 노동인권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든 진로 직업교육의 일환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노동인권교육과 상담 및 권리구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질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생이나 알바생들의 경우 현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가 지역사회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실제로 (회사에) 나가 보면 을의 입장에 서게 되는데 법적 권리를 설명해주어도 주장을 하기 힘들어서요... 현장실습 나갈 때 주40시간,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휴일로 챙겨주어야 하고 말해 놓아도, 회사에서는 남들 다 근무하는데 왜 너만 가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현장실습생은 근로조건이 이러하다 라고 설명해주어도 우리는

직원을 뽑았지 실습생을 뽑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회사도 많아요.” (특성화고 K교사 인터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민주인권교육센터 내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상시적인 상담과 권리구제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이후 법률적 절차(노무사, 변호사 지원)로 연계하여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고용노동부가 ‘알바신고센터’를 몇몇 특성화고 학교 내에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처럼 경기도교육청도 노동인권상담 및 권리구제절차의 접수 창구로써 ‘안심알바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법률자문단(노무사, 변호사 등) 위촉 및 공인노무사회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한 법률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이 하나의 센터로 전체를 포괄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클러스트 단위의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두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생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노동단체들이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먹거리 나누기’를 매개로 한 노동 상담, 생활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꾸준하고 지속 안정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자체인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여섯째, 지자체와 교육청을 비롯해 청소년 단체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지역 사회 전체에 이와 관련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고 이를 위한 상시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 자원의 최대한 활용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노동인권지역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 지역노동청, 청소년 노동교육 관련 단체,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는 주체인 사용자들의 참여를 위해 지역상공회의소 대표나 지역 노동조합 대표들의 참여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동인권교육은 학생만이 대상이 아니며, 교사들, 학부모들, 지역사회 주체들까지도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 스스로가 권리의식, 인권의식이 부재할 경우 학생들에게 이를 교육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학부모들과 청소년노동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사용자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업인 만큼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각급 학교와 주체별 정책 제언

## 가.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노동인권교육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안법 등 법률적 내용에 대한 지식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사이버 교육, 현장실습 전 개별 교육, 강당이나 방송 교육, 학급별 외부 강사 초청 교육 등 다양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는 곳조차 실제 교육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교육 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법률 지식 이외 노동의 가치, 노동3권, 인권 교육, 젠더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다양성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보다 폭넓은 관점과 내용 준비가 중요하다.

향후 교육 형태는 학급 단위별로 강사가 진행하는 참여형 수업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1년에 고작 2시간 실시되는 일회적인 교육을 넘어서 체계적인 학습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수교과로 배치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재 특성화고의 공통 선택 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일부는 노동인권교육과 밀접히 연계된 내용들이다. 따라서 정규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특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특성화고 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노동인권교육의 정규교과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특성화고 교사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노동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을 관할 지역 내 단위학교에 소개하여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실제 시민사회단체의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해 봤던 학교들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비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학교들은 그런 방법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특성화고의 경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써, 학생생활인권규정<sup>7)</sup>의 개정·정비를 지적하고자 한다. 특성화고 생활인권규정은 현장실습에 관한 별도 조항을 두고 있는데, 현장실습 관련한 내용에서 권리확인적·권리보장적 내용은 전혀 없고 현장실습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그 내용 중엔 현행 노동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위법한 내용이 학생이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성화고 생활인권규정 중 현장실습에 관한 내용은 대동소이하었는데, 예외 없이 “현

---

7) 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 지도, 학생 징계, 학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학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통상 학칙 이외에 교칙, 학교규칙 등으로 불리워지나, 경기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칙이란 명칭 대신에 ‘학생생활인권규정’으로 호칭하고 있다.

이는 그간 학칙이 학내 질서 유지와 학생지도를 위한 규율적 성격이 강한 반면, 학생생활인권규정은 학생을 통제와 지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인권을 향유하는 권리의 주체로 보는 관점 변화의 결과라 해석된다.

경기도 학생생활인권규정에는 학교공동체생활에 필요한 의무규정(예: 흡연금지, 교복 등)과 인권조례에 따른 권리규정이 혼재해 있다. 권리규정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거나,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란 조항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노동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즉, 노동자의 부주의, 실수에 따른 사고라 할지라도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어떤 연유에서 특성과 현장실습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 위반된 상태로 문구조차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규정화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상당기간 답습하여 존치돼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성과 생활인권규정에서 노동법에 부합되지 않은 위법한 내용의 삭제·개정이 요구된다.

### 나. 일반고등학교와 대안학교

일반고에 있어서 노동인권교육은 일회적인 형태로 진행되기 보다는 오히려 교사들의 수업 시간이나 제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지속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이 일회성을 벗어나 3~4회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면 수능 이후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교육 내용은 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근기법, 산안법 등을 비롯해 노동의 가치나 노동 3권 등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학교인 C실업고의 경우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지역단체들과 함께 일회적 교육을 넘어 한 학기에 일주일에 한 시간씩 13회에 걸쳐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한 과목 강의를 참여형 교육방식으로 한 반에 3~4명의 보조강사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어, 교육 내용의 충실함이나 효과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권리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터에서 실천하는 데는 많은 현실적 제약과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청과 지역사회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어 ‘교육기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초·중학교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과와 내용과 연계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답한 비중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단체교섭 등 노동인권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비해 현재의 우리나라 조건을 감안하여 볼 때 교과 과정에 결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노동인권 감수성 함양이 초등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 연수 강화와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자유학기제를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 과정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라. 학교 밖 청소년**

교사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여는 ‘청소년노동인권캠프’는 노동인권교육의 일회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체계화된 6시간의 교육을 집중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교육 효과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일부 약간의 도움 이외에는 거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함으로 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의 여건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는 불안정성이 존재해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그런데 학교 밖 노동인권캠프가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이들의 네트워크와 홍보활동만으로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캠프에 참여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종 청소년센터 등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며, 캠프는 학교 밖 청소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마. 교사와 관리자 연수 프로그램의 체계화와 자발적 학습공동체**

교사 스스로의 권리의식 인식이 학생들에게 권리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교사와 관리자 연수 프로그램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며, 방학 중 독자적인 노동인권교육 교사 연수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포괄적 내용을 가진 노동인권교육이 한두 차례의 단기적 연수를 통해서 습득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후 지속적인 학습과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계기를 마련하여 노동인권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교사들의 경우는 이후 자발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스스로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즉 최우선적으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며,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후원을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 **바. 학부모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학부모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지원과를 통해 학부모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에 노동인권교육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는 다수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문제인 노동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사용자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업인 만큼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문 1>

송유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 청소년 근로권의 교육 현황 및 추진계획(고용노동부)

### □ 청소년 근로권의 교육 현황

○ 권익 침해 유형별 제도, 구제절차, 행정서비스 등을 종합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콘텐츠 개발('14.12월) 및 배포

○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교육청이 협업하여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특강\* 실시

\* ('14) 249회, 39,791명, ('15.8월) 179회, 30,893명 교육 실시

○ 고용노동연수원 주관으로 청소년 노동교육 심화과정\* 운영

\* 중고등생, 교사, 학교 밖 청소년 대상

('14) 187회 25,292명, ('15.8월) 369회, 30,532명 실시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125명)한 공인노무사를 통해 유선·온라인 통합상담, 교육 및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을 무료로 지원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 '15.8월기준 1,092건 상담, 5,150명 교육, 권리구제 192건

- 민·관 협력으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찾아가는 교육·상담 기능을 담당하는 알바신고센터 운영\*(11개소)

\* '15.8월기준 739명 상담, 11,337명 교육, 권리구제 130건

- 주요 프랜차이즈 등 업종별 협회 등과 협조하여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노동법 교육** 등으로 인식을 개선

\* 5.19. 알바천국·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 체결(▲표준근로계약서 확산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체계 구축 ▲공동캠페인), 프랜차이즈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홍보 스티커 배부(8월)

- 고용센터에서 직업진로지도 서비스\*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등 취업특강** 실시

\* ('14) 19,970명 대상, 300회 실시, ('15.8월) 14,221명 대상, 232회 실시

## □ 향후 계획

- 기 마련한 청소년 교육·콘텐츠(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수첩 등)에 **청소년 권리 및 의무, 권익 침해 유형별 사례** 등을 보완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사업을 통해 중앙단위에서는 다양한 교육방법 및 교재 개발 등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 지역단위에서는 자치단체, 지역 유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교육·상담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 추진**
  - 특히, 특성화고 및 일반고에 실시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협조하여 **확대 실시**
- 인턴제도가 본래의 교육·실습 목적이 아닌 노동력 활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금년중 「(가칭)인턴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 현장에서 사업주, 실습생, 실습위탁기관 등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 기초고용질서 확산을 위해 청소년 접근성을 고려한 집중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홍보수단 위주로 대상별 맞춤형 홍보 추진

\* 청년층 대상 영상광고 제작 및 SNS(유튜브, 피키캐스트 등) 활용 홍보, 알바서포터즈 운영 및 중·장년 대상 라디오 광고 등 지속 추진

- **사회과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관련 사항이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 <토론문 2>

박중훈<sup>8)</sup>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사무관)

# 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한계와 미래

## 1. 들어가며

‘노동인권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당선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얼마만큼 왔는가? 진숙경 연구위원님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표문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의 가진 한계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검토해보았다.

## 2.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의 현황

류한승 팀장님의 발표문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 현황과 과제」 2페이지 참조.

<표 31>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실천계획 중 노동인권 항목 (금액단위: 천원)

세부 과제	내역	예산	비고
학생 노동인권 관련 교원연수	1강좌 40명	3,000	겨울방학 예정
학생 노동인권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100학급	13,000	
노동인권교육 학생용 워크북 제작	1종(고)	15,000	권리수첩 발간
노동인권교육 교사용 매뉴얼 제작	1종	8,000	

2016년부터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노동인권을 전담할 전문가를 배치하고, 안심알바센터로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담당사무관, 변호사

### 3. 한계와 대안

#### 1. ‘학생’ 과 ‘교육청’ 의 한계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가장 장점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있는 학교들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한계는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학교’ 의 ‘학생’ 과 ‘교사’ 로 대상이 국한된다는 점이다. 즉 학교라는 테두리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이나 대안학교들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특히 학교 안 청소년들에 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동에 직접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는 서울시나 구청,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같은 단위에서 이러한 부분을 나눠서 맡고 있는데, 향후 교육 단위들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연대하여 ‘학교 안팎의 노동인권’ 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 2. 교사들의 ‘인권’ 포비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점차 학생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한 문제제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인권’ 교육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번에 ‘학생 노동인권 관련 교원연수’ 신청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점이 드러났다. ‘인권’ 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교사들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노동인권교육은 일반 학생인권교육에 비하여 좀 더 교사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에서도 설명해야겠지만, 노동인권교육이 단순히 근로기준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아닌 이상, 결국 학생인권과 큰 궤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학생들이 목소리내기’ 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분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 3. ‘노동인권교육’ 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역시 발표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노동인권교육은 단순한 법조문 알려주는 교육

이 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던 노동교육은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결국 그것은 ‘알바’ 하는 학생들의 노동법 인식도 향상에 주안점을 맞추게 된다. 물론 특성화고에는 이러한 과정이 시급한 문제일 수 있으나,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이다. 지금도 서초동의 많은 변호사들은 추가수당 없이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먹듯이 하고 있고, 쉽게 해고당하고 있다. 변호사들에게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일반 성인들이 노동법을 잘 몰라서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보통은 ‘권리로서의 노동권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의 문제에서 노동권의 침해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결국 ‘노동의 가치’를 학생들이 인식하고, ‘노조’를 권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인권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학생인권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이 큰 방향에서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노동인권교육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는 순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장에서의 반감은 매우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 4. 우수한 강사 수급의 문제

교육청이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실제로 노동인권교육을 온전하게 진행할 강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교육청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현재 ‘노무사 협회’ 등에서 교육에 대한 의사를 밝힌바도 있으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강의할 강사는 단순한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고, ‘노동인권감수성’을 가진 분이어야 하기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현재도 많은 인권강사들과 노동인권강사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실제로 제대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은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관련단체가 깊게 고민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 5. ‘보편’이 아닌 ‘특별한’ 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의 한계

발표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학교는 이미 수많은 ‘법정수업’의 홍수로 넘쳐나고 있다. 이에 학생인권교육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의무’로 하고 있으나 실무적

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학교의 현실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권교육-노동인권교육도 무조건 강제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현실인 것이다. 그러한 현실을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노동)인권 강사를 통해서 (노동)인권교육을 추가 교육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정규교과과정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거나 이번에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사례에서처럼 학교의 교육과정 및 예비교사의 양성에서까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부분이 녹아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5. 교사들의 노동인권과 교사노조의 문제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들을 상대로 한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교사나 학부모에게 ‘노동인권감수성’을 키워주는 것인가로 나뉜다. 그런데 전자의 교육을 잘 받은 교수나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결국, 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나 인식이 없다면 무용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교사나 공무원에게 노동3권이 온전하게 인정되지 않는 현실, 특히 교사의 경우 전교조가 탄압받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노조조합원이 매우 적은 현실 등으로 볼 때 자칫 노동인권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큰 반감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치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6. 소결

결국 우리가 노동인권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교육행정과 교육현장의 단단한 벽에 막힐 때면, 가끔은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회의도 든다. 차라리 ‘송곳’ 웹툰이나 드라마를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자조적인 생각도 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공식 교육 기관인 교육청에 학생인권-노동인권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그곳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분명 어디엔가는 타성에 젖은 교육청의 인권강의를 계기로 삶이 변한 아이가 있을 것이다. 교육은 그 한명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디어 보이지만, 학생인권센터도 꾸준히 달려가고자 한다.

##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 1.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 청소년의 근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근로 청소년의 다수가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로환경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부당 노동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

지난 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sup>9)</sup>에 따르면 업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의 비율은 25.5%에 그쳤으며,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비율은 31.9%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학교에서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청소년은 16.5%에 불과

- 또한, 학교에서 노동교육 경험은 중학교 15.8%, 고등학교 16.8%(일반고 14.8%, 특목고·자율고 13.4%, 특성화고 27.3%)에 그쳤으며, 71.7%가 아르바이트 시 부당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

---

9)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연구('14.12.30)

(단위 : %)

내용/구분		경험 있다	경험 없다
전체		16.5	83.5
교급	중학교	15.8	84.2
	고등학교	16.8	83.2
지역	대도시	18.2	81.8
	중소도시	16.0	84.0
	읍·면지역	13.5	86.5
고교계열	일반고	14.8	85.2
	특성화고	27.3	72.7
	특목고·자율고	13.4	86.6

<(표 1) 노동인권교육 경험 유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지난해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년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중 4명은 주휴수당을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급여명세서 미수령 경험이 있는 청년이 2/3 이상이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한 노동교육이 부족하여 실제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활동 시 부당한 노동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 한편,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일반고 사회과 교과서 17종 전체 4,612쪽 중 노동 관련 내용은 83쪽으로 2% 정도 수록되어 있었고, 특성화고 상업·정보계열 필수과목 ‘상업경제’에 노동관련 서술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업계열 필수과목 ‘공업입문’에 관련 단원은 있으나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었다.<sup>10)</sup> 따라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근로자로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노동관계법, 근로권익보호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는 것은 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나 이에 대한 교육내용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0) 신문기사 인용(한겨레신문, 2015. 4. 20.)

## 2.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추진현황

○ 서울시는 올해 4월,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행정 개념을 도입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근로조건 기준 설정·근로감독권 및 노사 분쟁조정 권한 부여 등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인 노동정책 추진 환경을 감안,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교육 등 예방적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가장 대표적인 노동인권교육 사업인 자치구·학교·사업장 등으로 찾아가는 ‘함께노동아카데미’를 ‘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바,

증가하는 노동교육 수요에 맞춰 금년에는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노동교육 전문강사풀 구성 규모를 확대(133명→214명)하여 지난 5월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양질의 노동교육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을 희망하는 10인 이상의 단체는 누구나 서울시로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날짜에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총 22,511명의 시민이 함께노동아카데미를 수강하였다.(’15.11.20 기준). 특히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의 협조를 얻어 일반고, 특성화고 등 청소년 노동교육 수요를 중점 발굴한 결과, 13,639명의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 또한, 서울시는 앞에서 언급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이 부족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교육부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노동교육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노동 관련 내용 추가, ② 특성화고등학교 필수 과목 교과서에 실질적인 노동 관련 내용 추가, ③ 정규 수업시간 노동교육 내실화, ④ 특성화 고등학교 노동교육 의무화 검토, ⑤ 근로계약서 작성해보기 등이 있는데, 향후 서울시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방법을 도입하

고, 건의내용 반영여부에 대한 교육부와의 협의 등 협력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고용주 및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강화·홍보를 위해 ‘청소년 노동권리수첩’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0,000부를 제작하여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고용업체, 서울시 특성화고 등에 배포한 바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기초노동법을 종합적으로 총망라한 ‘서울노동권리장전’을 12월중으로 발간하여 서울시 내 학교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및 표준 근로계약서 제작 배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노동인권 침해사항,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1) 서울시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 이밖에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노동권익센터 및 4개 자치구(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노동복지센터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시민노동법률학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3. 향후 계획

- 서울시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조하여 일반 중·고교 및 취업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서울노동권리장전』 제작 후 이를 서울시 각급 학교 노동인권교육 일반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청소년 노동권리수첩의 지속 제작 배포,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풀 교류를 추진하고
- 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서울 노동권익센터와 노동교육 프로그램 교류 및 협의 등 다양한 노동교육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서울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 또한, 중학교 때부터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노동 운동에 대한 역사, 노동권의 발전 과정 등을 상세히 가르치는 프랑스, 노동법에 근거한 노사 관계 등을 사회과목 교과서를 통해 학습하고 학생들이 직접 노조 간부나 사용자의 입장이 되어 임금 협상 등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연습을 하는 독일 등의 외국 사례를 적절히 접목시켜 근로계약서 작성해보기, 최저임금 밥상차리기, 근로기준법 골든벨 등 청소년(학교) 대상 소규모 그룹형, 체험형, 참여형 방식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발굴해 청소년 노동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토론문 4>

하인호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 노동인권과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정책 방안」 과 서울시의 과제 토론

하 인 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천비즈니스고 교사)

#### 1. 발표자에 대한 의견

##### 가. '일하는 청소년 유형 분석과 정책지원방안'(김지경 발표자)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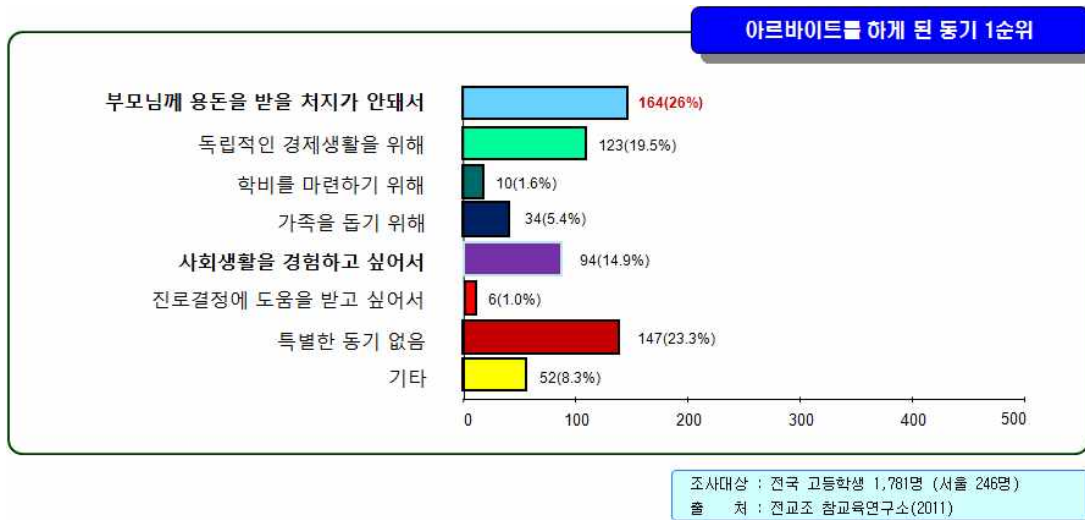
- 일하는 청소년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 지원 방안을 발표해 주셨는데, '비경제적 목적의 일하는 청소년에게는 현장 중심의 직업체험 및 인턴쉽 프로그램의 확대 및 활성화', '경제적 목적의 일하는 청소년에게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관련 법조항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학교 중심의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청소년 복지시설 및 자립생활관 등으로 확대 실시', '취업사관학교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연계지원 활성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 다만 유형을 나누면서 '경제적 사유'와 '비경제적 사유' 두 가지로 나누고, 비경제적 목적의 경우 '추가적인 소비나 경험'을 목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 이러한 유형 분석은 복잡한 사유를 가지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 노동을 지나치게 단순화 했다는 생각과 함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기가 복합적임에도 이렇게 단순화 할 경우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이 나올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해 흔히 용돈벌이 노동이라면서 낮추어 보거나 소비적이라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은 사치품이나 사려고, 용돈벌이로 알바를 한다.'는 것, 청

소년 알바는 소비욕구를 채우기 위해 일한다는 오해가 깔려 있다. 청소년은 독자적 욕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가?

- 별어서 어디에 쓰느냐가 왜 중요할까?  
비청소년에게는 사치품 구입 운운하며 일하는 이유나 목적을 폄하하거나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유독 일하는 청소년에게는 그런 물음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고 있는 것일까?
- 이런 부당한 인식이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을 평가절하 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거나 저임금을 고착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청소년 가운데에는 자기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거나 양육해줄 사람이 없거나 있더라도 양육자가 경제력이 없는 형편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노동은 더욱 긴급한 생존의 문제이다. 그런데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노동하는 이유를 알잡아 보고 하찮게 취급한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된다.’는 식으로 바라보게 된다.
- 청소년 노동의 이유를 묻는 목적이 분명해져야 하며, 질문 자체를 변화 시켜야 한다.



### “알바비” 받아서 어디에 지출하나?

생계비 계측조사 항목	조사 결과에 따른 항목	비율(%)
식료품(외식포함)	외식비	3.7
광열수도	해당사항 없음	0
교통, 통신비(핸드폰, 인터넷, 대중교통비)	교통비, 핸드폰 구입비, 핸드폰 요금	10.3
문화오락(영화, 방송수신료 등)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8.8
주거비	해당사항 없음	0
의료비	해당사항 없음	0
교육비(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책값, 학원비, 수업료나 등록금	3.4
각종행사비(경조사비)	해당사항 없음	0
저축, 보험	저축	8.2
피복비	피복비	27.9
합계		62.3

- 청소년들이 왜 일을 선택하게 되는지, 일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청소년 노동자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을 학교로 돌려보내기만 해서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

#### 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쟁점과 개선 방안’ (진숙경 발표자) 대한 의견

- 발표자께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선 방안 중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 배정 등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전문적인 노동인권교육 실현을 위해 교사 및 외부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 지속적인 노력’, ‘학교 관리자 및 교사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 ‘노동인권교육이 알바생이나 현장실습생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제한적 사고를 벗어나 미래의 “일하는 자들”의 시민 의식 고양 차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로 확대’, ‘노동인권교육과 상담 및 권리구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 ‘지자체와 교육청, 청소년 단체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상시적인 네트워크 형성’, ‘노동인권교육은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체들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장해왔던 내용과 일치한다.
- 각급 학교와 주체별 정책 제언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함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보다 폭넓은 관점과 내용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 ‘정규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특히 요구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일반고등학교와 대안학교에서 수업시간이나 제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지속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고3 학생 대상으로 수능 이후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 ‘초·중학교에서 교사 연수 강화와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중학교의 경우 자유 학기제를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교사들과 지역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여는 청소년노동인권캠프’, ‘교사와 관리자 연수 프로그램의 체계화와 자발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학부모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인권 정책을 풍부하게 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민주인권교육센터 내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창구를 일원화하고, 이후 법률적 절차(노무사, 변호사 지원)로 연계하여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점’과 함께 ‘몇몇 특성화고 학교 내에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 대부분의 알바신고센터가 이름만 있는 유명센터가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광주시교육청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알바신고센터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청소년들 가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 안과 학교 밖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 인천지역의 경우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알바신고센터(2014년 상담 8건 노동청 진정서 제출 4건, 2015년 상담 12건 14명 노동청 진정서 제출 11건 13명이 구제)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학교 밖에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15년 3/4분기까지 40여건 상담)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다.
- 시교육청과 단위 학교에 알바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청은 단위 학교를 지원하고, 미설치교를 대상으로 상담 실시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알바신고센터를 지정 설치만하고 방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청과 교육청간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교육청은 「알바신고센터」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토론자는 청소년 노동인권과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보완해야 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2.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서로 협력하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 가. 서울특별시 청소년노동인권 사업

- 서울시는 ‘노동’이 존중 받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 4개 근로자복지센터(성동, 서대문, 노원, 구로)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 또는 자체 사업을 통해 교육을 진행 중이다.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올해 상반기 동안 몇 개 지역에서 청소년 인권활동 양성과정이란 이름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각 지역 학교에서 교육 요청이 오는 경우 워크숍에 참여했던 분들과 교육을 연결하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연결만 하다 보니 내용은 통일성이 없이 지역마다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분들도 다양해서, 강사 양성 과정으로 생각하고 오는 분들과 활동가 과정으로 생각하고 오는 분들이 섞여 있다. 이 분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상이 많이 다른데,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에 대해 점검하고 내용을 마련하는데 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교육팀이 팀장 1명, 팀원 2명/ 다른 업무도 많음)
- 서울시에서 모색하려고 하는 서울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1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사 대상 연수, 학생 대상 교육 등의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지 등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특성화고 몇 학급, 일반고 몇 학급 교육을 외부 강사에게 맡겨 진행하는 방식으로 굳어질 우려가 크다. 이전보다 외부강사가 학교로 들어가는 교육이 많아진다는 게 전체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지에 대해 살피는 것 같지가 않다.

### □ 토론자 의견

- 1) 서울시의 경우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사업을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인권 플랫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
- 2) 그리고 구나 시의 단체장이 교체 되더라도 노동인권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서울시는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을 지원 한다. -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의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과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교육 장소를 지원한다.
- 4) 노동인권 상담소 설치 및 운영과 지원하고, 알바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한다.
- 5) 서울시는 노동인권교육관련 교육청에서 직접 해야 할 교육을 대신해서 학교

로 들어가는 노동인권교육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하는 교육, 자치구별 청소년 이용 시설에서 진행되는 교육, 청소년·학부모·사업주 대상 청소년노동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대상 교육 등에 더 힘써야 한다.

- 6) 전문가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 노동인권 관련 보도 방송물 발굴·홍보,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기반 구축
- 7)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형성 등 협력체계 구축 : 시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민주노동지역본부, 지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관계 기관과의 노동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
- 8)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 광주광역시<sup>11)</sup>와 전라남도가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북구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협의회」<sup>12)</sup>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차원의 ‘민관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 9) 「청소년노동인권복지센터」 설치
- 10) 청소년노동인권 홍보자료 제작 배포, 청소년노동인권 홍보 활동 지원
- 11)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 및 지원 - 성북구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 프로그램<sup>13)</sup>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차원의 운영과 지원이 필요하다.
- 12) 청소년노동인권 캠프 주최 및 지원
- 13) 청소년 아르바이트 창출 및 정보 제공

#### 나.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소년노동인권 사업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1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그러나 특성화고 교사 대상 노동인권교육 직무연수<sup>14)</sup>를 진행한 것 외에는 실적이 없다. 교육감 선거 이후 노동인권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없어 지지부진하다.

11) 광주 지역 사례 : (5개 민관 기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월 1회 정기회의 실시, 광주시 전 지역 청년·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수막 사업, 상담협의회 정기 개최, 청소년노동인권 학교 교육 강화,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청소년노동인권 캠프 운영, 가출 청소년 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청소년 단체 활동가 대상 교육)

12) 위원 구성은 공공기관,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청소년기관, 전문가(노동, 교육, 인권), 구청 등 20여명 이내, 분기별 1회 개최, 주요 기능은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근로환경 개선, 노동인권침해 예방 및 모범사례 발굴 청소년노동인권 홍보 등 공동 추진

13) 추진대상 : 청소년 20명 내외 4개 그룹(교사, 노무사 등 전문가 2인 이상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 및 운영), 추진내용 : 노동법 및 인권일반, 상담기술 등 기본 소양강의, 노동인권침해 사례 연구 및 상담실습, 체험 등 워크숍 방식의 노동인권상담사 전문 양성 과정 진행(8회~12회차 교육, 인증서 발급)

14) 교사 대상 직무연수의 경우 서울교육연수원, 민주시민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에서 따로 진행해 왔다.

- 2015년 8월 ‘2015학년도 학생노동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학기부터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2015년에는 100학급, 2016년 200학급, 2017년 300학급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서울노동권익센터,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 기본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노동인권교육과 교사 직무연수, 학생 인권 상담 및 권리 구제 업무 등 학생 노동인권을 「학생인권교육센터」로 다 이관하여 총괄토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처럼 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업무를 총괄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교육청 내 인권교육센터는 현재 학생인권옹호관(4급) 1명-사무관(5급) 1명-조사관(7급 대우) 4~5명이 있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 사항 상담 및 조사가 주 업무이며, 현재는 교육만 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인권교육 중 노동인권 교육을 특화해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도맡겠다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무사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거부감이 학교 현장에 많다 보니 노동인권교육으로 그 내용을 채우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하고, 교육청 차원의 전체 그림 없이 일부 학급 교육 실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 서울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MOU를 맺고 학교로 들어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되면서 교육이 연말에 몰려 있다. 당초 MOU내용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특성화고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일반고와 중학교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되면서 특성화고 교육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 토론자 의견

- 1) 정규 교과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교육 과정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노동인권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이전이라도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3) 학교 노동인권교육 추진
  - 가) 추진 방향

노동인권감수성 증진을 통한  
노동인권의식 함양



가) 추진 과제

① 노동인권교육 정책 및 연구

-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 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 노동인권교육과정 및 과목 개설 등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추진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노동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전문가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 노동인권 관련 보도 방송물 발굴·홍보,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기반 구축.
- 네트워크 형성 등 협력체계 구축 : 시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민주노총지역본부, 지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관계 기관과의 노동인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② 노동인권교육

- 학교 노동인권교육 기본 계획 수립
  - 청소년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노동인권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과 학교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시교육청
-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개발·관리 체계구축
  - 전문가 자문회의
- 노동인권교육 교재 개발·보급 : 기본 계획 수립, 노동인권교육 모듈화 및 표준교안 개발, 개발심의 위원회 구성 등
- 노동인권교육 연구 및 사례 발굴 : 노동인권교육 연구회, 노동인권 동아리

운영, 노동인권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등.

- 노동인권 전문 강사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 노동인권 전문 강사양성 기본계획 수립
  -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학교 운영 지원
  - 노동인권 전문 강사 관리체계 구축
  -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단위 학교 요구 시 우선 배치
  - 전문 강사단을 통한 학교 방문 교육 실시
- 학교 노동인권교육
  -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은 1차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중학교로 확대한다.
  - 학교 교육은 학급당 2시간 씩(고3은 3시간) 참여형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 교원 노동인권 연수
  - 교원 연수과정운영 기본계획 수립
  - 특성화고 교사 대상 노동인권 직무연수(15시간) : 지역의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등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강사단 학교 강사진 등과 연수 협력 체제 구축
  - 교원 노동인권 직무연수 개설(15시간) : 교육청 또는 교육연수원, 진로·진학교사, 사회과 교사 참여 권장
  - 필요시 찾아가는 노동인권 직무연수 추진(15시간)

### ③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

- 노동인권상담소 설치 및 운영 : ONE-STOP 서비스 제공, 학교 방문 상담
  - 노동인권상담소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 기존 알바신고센터를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및 알바신고센터」로 확대 개편
  -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및 알바신고센터」 설치 운영
  - 전체 특성화고등학교에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및 알바신고센터」 설치 운영
  -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담당 교사 배치와 외부 청소년노동인권관련 기관 과 업무 협조
  -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및 알바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역할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체제 구축
  -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및 알바신고센터」가 미설치교를 대상으로 상담 실시
- 구제 조치 활동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담반 운영, 노동인권 침해 및 구

제 사례집 발간

- 상담과 동시에 구제 활동 병행
- 청소년노동인권단체 활동가의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진행
- 지방노동청과 협의체를 통한 지원 방안 마련
- 청소년노동인권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3.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가.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을 직업 교육적으로 승화시켜 학생들이 건전한 직업의식을 형성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을 막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이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물꼬를 터주는 학문적 정책적 지혜와 학교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미 OECD 국가들은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 프로그램들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학교 연계 여름방학 취업(school linked summer employment)'은 고등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원활한 학교-직업 이행을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이다.

나.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학교교육(노동교육)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진로 및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학교 내의 진로체험학습의 현실화,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연계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새로운 진로교육의 현실화 또한 이루어 질 수 있다. 진로탐색을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청소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 외에도 노동인권교육 강좌, 다양한 직업을 접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자세, 일의 세계에서 필요한 기능 습득 등을 위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다음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교육부와 단위학교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학교교육(노동교육)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진로 및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특성화고에 배치되고 있는 취업지원관, 진로취업상담교사, 산학인턴교사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 확보와 노동인권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게 하면 될 것이며, 일반고 계고는 체험학습이나 봉사활동 부서가 담당하면 된다.

라. 「청소년노동인권복지센터(가칭)」를 설치할 것을 제안 한다.

- 1)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창출 및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을 지역 차원에서 확대 하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청소년관련 공간과 단체 사업을 ‘청소년노동인권’을 중심으로 구인/구직 알선, 노동법에 대한 기초교육과 노동인권교육, 직업상담, 직업체험, 직업생활 고충상담, 노동권의 보호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수행하며 점진적으로 쉼터와 도서관 등을 포괄하는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만들어 간다.
- 2) 「청소년노동인권복지센터」는 공간적인 개념과 함께 지역의 「청소년노동인권복지센터」 관련 사업과 활동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 3) 서울 지역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노동인권복지센터」화 할 필요가 있다.
- 4) 「청소년노동인권복지센터」는 민·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되, 위탁운영이 아닌 지자체장이 교체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례 등으로 설치 근거를 만들어 둔다.
- 5) 「청소년노동인권복지센터」의 주요 사업
  - 가) 온·오프라인을 통한 일자리 지원
    - 시청-교육청-지방고용노동청-공인노무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노동·인권 단체와 업무 협약 체결
    - 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 체결, 아르바이트 상담 및 신고센터 설치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 보호 대책 추진
    - 근로 장학 등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 창출
  - 나) 노동인권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 시청, 지방고용노동청, 노무법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등과 청소년인권보호네트워크 구성
    -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의 방학기간 집중 점검 협력,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 파악, 점검, 점검 사업체 대상 선정 등에 협력
    - ‘청소년노동인권상담 및 안심 알바신고센터’ 운영
    - 노동인권 홍보 캠페인
    - 청소년 출입 업소 및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현재 진행 중인 여가부 주관 관계 부처 합동 점검과 결합 + 시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모범업소 선정 및 클린지역 지정 운영
    -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 청소년노동인권 상담원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
    - 학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다) 청소년 직업체험

- 일일 직업체험
- 진로 탐색 및 노동인권 캠프
- 학교 연계 사업

라) 장기적으로 청소년 컴퓨터와 도서관, 청소년 직업체험 센터 등을 포괄하는 청소년종합 복지센터(가칭)를 만들어 간다.

마.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인권 상담 실시

1)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지금의 참혹한 노동현실이 반복되도록 만든다. 소중한 노동, 차별 없는 노동, 인간다운 노동, 안전한 노동, 건강한 노동, 즐거운 노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힘은 바로 노동인권교육으로부터 나온다.
- 더욱이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주도 노동자의 권리에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노동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이 노동자·사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

2)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권고 사항, 2010.3.22.>**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권리 및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3)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노동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노동기본권 침해 사실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주도 노동자의 권리에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노동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이 노동자·사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

바. 청소년 노동인권관련 캠페인, 홍보, 지도점검, 상담, 교육은 별개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노동인권 교육이 먼저 이루어 져야 상담도 이루어지고 피해 신고가 이루어지며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정기적으로 캠페인 및 거리 상담이 이루어지고 학교 내와 학교 밖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노동지청) 그리고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독자적으로 성과도 없는 행사성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단체들과 상시적인 채널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단체들과 함께 캠페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단체들이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일자리 발굴 및 노동인권교육, 상담, 피해사례 신고 등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것이 UN(국제연합)의 아동권리협약 제32조에서 말하는 ‘국가가 경제적인 착취, 위험한 노동, 교육의 방해,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 사. 지역의 노동인권네트워크 형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1) 서울시 관련부서 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 서울시 주요부서 청소년 노동 관련 사업이 아르바이트 사업은 ‘일자리정책과’, 취약계층 노동인식 개선 홍보 및 매뉴얼 제작은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여성가족정책실의 아동청소년담당관도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
  - 이처럼 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노동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십대 청소년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현재 청소년 노동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진흥실의 일자리정책과와 노동정책과 외에 여성가족정책실 내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이 함께 협력하여 청소년노동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지역의 노동인권네트워크 형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지역 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교원단체, 인권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 단체와 개인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산업현장에서의 자신의 노동을 감추고 왜소해져 가는 많은 청년들에게 소중한 공동체의 삶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할 것이다.
  - 노동법 위반이나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대응을 일상화하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상담체계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아르바이트 할 때 필요한 노동인권 교육 등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봉사활동 중 일부를 아르바이트로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노동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 노동운동단체, 청소년단체들과 교사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양한 노동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노동절 공동수업, 계발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방안, 각 교과와 관련된 노동인권교육프로그램(예, 역사: 근현대사에 일제 하 노동운동사, 해방이후 노동운동사, 사회교과: 노동3권, 근로기준법 해설, 노동자 경제학, 국어: 민중문학과 노동문학을 통한 노동교육 등)을 교과서 보충교재로 개발보급 한다.
- 교육청이 노동·교육 단체와 함께 연수를 시행하고, 교사들은 노동인권교육연구회를 만들어 노동인권교육 사례를 공유하며,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해 청소년·인권·노동·교육운동 진영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우리 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지역의 노무법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청소년·노동·인권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아. 「알바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고용노동부, 학교에 요청되는 역할

##### 1) 알바신고센터 운영 현황

- 알바신고센터는 학교와 알바(청소년 노동)를 병행하느라 일을 하는 중에 대한 각종 침해가 발생하여도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고소·고발 또는 진정을 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고소·진정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센터이다.
- 안심알바신고센터는 학교 내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알바를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침해를 교사와 상담하여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를 당한 청소년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직접 갈 필요 없이 간이하게 진정·고소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는 교사와 학생이 출석 가능한 시간에 출석예약제를 실시하여 원하는 시간에 출석을 하도록 하거나, 출석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전화 조사나 근로감독관이 학교로 방문하여 교사 입회하에 조사가 가능한 제도이다.
- 2010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시범운영하였다가 그 성과(인천시내 고등학교 12개 고설치하고, 6건 신고 받아 처리 완료)를 인정하여 2011년 9월 전국으로 확대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각 학교의 지원을 받아 204개 학교에 설치되었다가 2012년 8월 111개로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설치를 보도 자료를 통해 적극 홍보함.
- 2014년 12월 말 현재 전국 241개소 운영 중, 서울시의 경우 69개 기관에 설치(특성화고 39교, 대학 17교, 청소년수련관 6개, 상담복지센터 5개, 근로복지센터 2개)
-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여야 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성년으로서 사업주와 일대일로 대질조사를 받아야 하는 심리적 어려움과 부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노동

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여 왔다. 이에 각 학교에 「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담당교사의 도움을 받아 진정·고소를 간이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알바신고센터」는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인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권리 의식 향상을 위하여 분명 좋은 제도이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확대되어야 할 제도 도입에 분명하다.

- 고용노동부는 2012년 11월 고용노동부는 교과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TF」를 구성 분기별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는 등 알바신고센터 확대와 함께 운영 내실화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알바신고센터는 이름만 있는 유명 센터가 되어가고 있다.
- 2013년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TF」 회의에서 신고센터 설치 확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 강화, 알바신고센터 설치·운영 매뉴얼 제작, 센터 상담원 상담 능력 제고, 지방고용관서, 신고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강화 등 협조체계 구축, 간담회 개최(분기 1회 이상) 등을 제시하였으나 홍보와 매뉴얼 제작 외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 알바신고센터 운영 문제점

### (1) 안심알바신고센터 실태 조사 결과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12년 4월 고용노동부에 알바신고센터 담당부서의 확인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해 공개 질의하였으나, 담당교사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자체적으로 2011년 11월 기준으로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된 104개 학교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자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011. 11. 기준으로 설립된 104개 학교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운영자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확인한바에 따르면, 결과는 절망적이다. 2011년 가을 학기에 설치된 이후 2012년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현재 담당교사가 없는 학교도 많았으며, 통화가 된 절반의 학교 이상이 “우리 학교는 알바가 금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걸 설치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즉, 인천여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 운영 실적이 없는 것 이전에 전혀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①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된 학교의 학생들은 「안심알바신고센터」 자체를 모르거나,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자신의 학교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 ② 지방 교육청 담당자들도 「안심알바신고센터」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어느 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었는지 모르고 있다.
  - ③ 심한 경우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된 학교에서도 자신의 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 청소년들이 권리 구제를 신청하기가 어렵다.

- 노동인권교육의 부재로 청소년들은 첫째, 자신의 노동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며, 둘째,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셋째, 구제방법을 알게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시간적·상황적 어려움으로 권리 구제를 신청하기가 어렵다.

(3) 알바신고센터 지정을 한 이후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다.

-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고용노동청과 교육청이 「알바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고, 운영담당자 등 실태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알바신고센터」 지정을 한 이후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가 2013년 6월 제작한 「알바신고센터 운영 매뉴얼」이 재 발행되고 있지 않으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알바신고센터 담당자 바뀌는 경우, 「알바신고센터 운영 매뉴얼」이 있는지 조차를 모르는가 하면, 매뉴얼 내용을 모르는 근로감독관이 있다.
- 「알바신고센터 운영 매뉴얼」 중 알바신고센터와 고용노동관서 협조사항 ‘고용노동관서는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한다.’고 되어 있으나 1년 내내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1번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 「알바신고센터 운영 매뉴얼」 중 행정사항에서 ‘알바신고센터 운영 실적 및 전담자 지정(변경)사항을 매 분기 고용노동관서와 시도교육청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으나 단위학교에서 통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보하지 않아도 통보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4) 알바신고센터 운영 담당자(담당교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학교 「알바신고센터」 운영 담당자(담당교사)가 잘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알바신고센터 전담교사 및 상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센터 기능인식 및 상담능력을 제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5) 알바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가 학교 내 업무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 학교의 경우 담당교사들의 경우 「알바신고센터」를 부수적인 업무 또는 잡무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교사가 담당을 하면 활성화되나 관심이 덜한 교사가 담당하거나 담당교사가 없는 경우 이름만 있는 유명센터가 되는 경우가 많다.

(6) 알바신고센터 전담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감독관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 청소년 노동자 입장에서 사건을 전담할 전담감독관 제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전담감독관은 청소년이 주로 노동하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교육, 사건처리 등을 전담하게 하여 청소년 관련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근로감독관이 자주 바뀌고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청소년관련 사건을 성인 노동자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7)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와 교육청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 「알바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노동청과 교육청간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교육청은 「알바신고센터」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다.

(8) 알바신고센터 미설치교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 알바신고센터 미설치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알바신고센터 설치를 확대하거나 다른 학교나 학교 밖에 설치된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다) 알바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교육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 요청되는 역할

(1) 서울시, 교육청,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 여성가족부와 협조체제 구축하고,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와 교육청이 「알바신고센터」의 상을 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알바신고센터」가 제대로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② 담당교사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③ 시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b>고용노동부 = 주관</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알바신고센터의 주관, 설립</li> <li>2. 노동인권상담소 설치 및 운영 - ONE-STOP 서비스 제공, 학교 방문 상담</li> <li>3.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체제 구축 - 알바신고센터 미설치교를 대상으로 상담 실시</li> <li>4. 신고 사건의 처리</li> <li>5. 전담 근로감독관 필수(신고 건수가 부족하다고 하나, 신고처리 뿐 아니라 예방도 감독관의 업무임.)</li> <li>6. 조사 방식 개선(조력자 배석 허용 및 조력자 역할 강화/ 우편-유선 조사도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적극 활용)</li> <li>7. (지역청)홍보 및 담당교사 교육 담당</li> <li>8. 반복 위반 사업장과 신고 다발 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 감독(광역 근로감독과 기획 감독)</li> <li>9. 매뉴얼 중 상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매뉴얼 담당</li> <li>10. 청소년노동인권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li> </ol>
-----------------------	------------------------------------------------------------------------------------------------------------------------------------------------------------------------------------------------------------------------------------------------------------------------------------------------------------------------------------------------------------------------------------------------------------------------------------------------------------------------------------------------------------------------------

<p><b>여성 가족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과 학교 밖 알바신고센터 지원</li> <li>2. 노동인권상담소 설치 및 운영 - ONE-STOP 서비스 제공, 방문 상담</li> <li>3.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체제 구축 - 알바신고센터 미설치교(대학) 및 신고 센터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담 실시</li> <li>7. (지역청)홍보 및 담당교사 교육 담당</li> <li>8. 반복 위반 사업장과 신고 다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li> <li>9. 청소년노동인권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li> </ol>
<p><b>교육부/ 교육청 = 협조</b></p>	<p style="text-align: center;"><b>[학교 안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 컨트롤 타워 역할]</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안 알바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li> <li>2. 알바신고센터의 공간과 담당교사 배정</li> <li>3. 고용노동부가 보내 주는 협조 공문을 각 학교로 발송</li> <li>3. 4월말 경 알바신고센터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하반기에는 알바신고센터 활동 실태를 파악</li> <li>4. 담당교사에 대한 교육 또는 교사직무연수를 통한 노동권 기본교육</li> <li>6. 상담을 위한 노동인권교육(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필요</li> <li>7. 노동인권상담소 설치 및 운영 - ONE-STOP 서비스 제공, 학교 방문 상담</li> <li>8.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체제 구축 - 알바신고센터 미설치교를 대상으로 상담 실시</li> <li>9. 구제 조치 활동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담반 운영, 청소년노동인권단체 활동가의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진행</li> <li>10. 청소년노동인권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li> </ol>
<p><b>시</b></p>	<p style="text-align: center;"><b>[대학과 학교 밖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 컨트롤 타워 역할]</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과 학교 밖 알바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li> <li>2. 알바신고센터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하반기에는 알바신고센터 활동 실태를 파악</li> <li>3. 담당자에 대한 교육</li> <li>4. 노동인권상담소 설치 및 운영 - ONE-STOP 서비스 제공, 학교 방문 상담</li> <li>5.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체제 구축 - 알바신고센터 미설치교(대학) 및 신고 센터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담 실시</li> <li>6. 구제 조치 활동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담반 운영, 청소년노동인권단체 활동가의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진행</li> <li>7. 청소년노동인권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li> </ol>

(2) 단위 학교는 알바센터의 공간과 담당교사 배정

- 학기 초 「알바신고센터」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배정, 업무 분장을 할 때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담당교사가 알바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홍보, 상담, 신고, 처리종결까지의 업무를 어려움 없이 처리하도록 한다.
- 「알바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알바신고센터」 취지를 알리고 관심 있는 교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위촉한다.

(3) 담당교사와 학생대해 노동인권교육

-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구제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구제를 신청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4) 청소년노동인권단체 등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 지방고용노동청과 교육청 그리고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 구축하여 앞서서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권상담과 홍보 활동, 교내 축제 시 노동인권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4. 청소년 노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실천 사례

청소년노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사례를 실천한 교사의 경우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인권 관련 연구 활동 을하고 교육부를 상대로 노동인권이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한편, 청소년노동인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학교 교사들과 함께 노동인권교육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노동인권 지도안을 개발하고, 자체 워크숍, 교사 대상 연수, 학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외부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들어오는 경우 강의안을 함께 검토하고 강사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와 노동인권교육 방법론 등을 함께 협의함. 그리고 학생학교 안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강사들도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함.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알바신고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학생 운영요원을 조직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과 교내와 홍보 활동, 학교 축제시 노동인권부스 운영 등을 통해 알바신고센터 운영 요원이라는 일을 넘어 노동인권 동아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활동

1) 「교사를 위한 청소년노동인권워크숍」

- 2009년~2013년 인천여상이 주최하고,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노동인권연수를 실시함.
- 프로그램은 몸 풀기 마음열기, ‘교사가 알아야할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숨은 그림 찾기(산업재해)’,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상황극)’와 평가 순으로 진행하였다.



나) 「실업계 고3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 2009년~2013년 3학년 전체 학급별 2시간씩 진행
- 프로그램 : 몸 풀기 마음열기(OX퀴즈), ‘어떤 사람이 노동자인가(동그라미의 비밀)’,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상황극)’ 순으로 진행.
- 2011년~2013년 직업진로탐색의 날, 「고3 노동인권교육」, 취업준비생 대상 학급별 2시간씩 진행, 대입수능모의고사를 보는 날 실시.
- 프로그램 : 몸 풀기 마음열기(OX퀴즈), ‘어떤 사람이 노동자인가(동그라미의 비밀)’,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상황극)’ 순으로 진행.



다) 『청소년노동인권상담 및 안심알바 신고센터 운영』

- 2010년 중부고용노동청(중부노동청) 시범 사업으로 운영함.
- 중부 노동청에 신고된 7건 중 인천여상 알바신고센터가 6건 신고하여 처리를 완료.
- 인천지역에 설치된 12곳의 센터 중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여상 ‘안심알바 신고센터’는 각 반에서 활동 희망자를 모집해 1학년 11명, 2학년 4명, 3학년 3명으로 구성됐다. 6명의 교사가 함께 참여해 『청소년노동인권상담 및 안심알바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취업정보실과 상담실에 현판을 부착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함.



인천여성 청소년노동인권상담 및 안심알바신고센터 개소식(2010. 7. 14)

- 2011년 학교 취업관련 예산으로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희망 수첩』을 제작하여 전교생에게 배포하고, 노동인권 관련 홍보 명함을 제작하여 교내 캠페인 및 노동인권 부스 운영 시 배포하여 좋은 호응을 받음.
-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희망 수첩』은 알바달력과 근로계약, 휴게, 임금 등 청소년노동자가 챙겨야 할 청소년과 노동인권, 노동법적 권리, 청소년노동자의 노동인권지킴이 소개, 민원 처리 연락처와 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책자는 서울, 경기, 광주에서 교육청에서 제작 배포하는 등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음.
- 2012년에는 교내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노동청에 통보하는 활동과 함께 교사 2명과 학생 26명이 『청소년과 세상(청세)』이라는 동아리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 알바지킴이 『청소년과 세상』은 알바신고센터 운영요원 회의 및 노동인권교육을 실시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 「알바신고 센터 홍보 및 노동인권 캠페인」, 교내 「직업진로 지도 박람회 노동인권 부스」 운영(근로계약서 작성, 설문 스티커, 노무사 상담), 학교 축제(백조제) 시 「노동인권 부스」 운영 함.
- 알바지킴이 『청소년과 세상』는 교내 활동에 멈추지 않고, 교외에서 인천청소년노동인 권네트워크와 함께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2011인천NGO대회』 노동인권 부스 운영, 학생인권축제 시 노동인권축제(부평역) 운영하는 등 2013년의 경우 평균 한 달에 한번

꼴로 부평문화의 거리, 구월동 로데오 거리 등 청소년들이 밀집한 장소를 거점으로 삼아 거리 상담과 홍보를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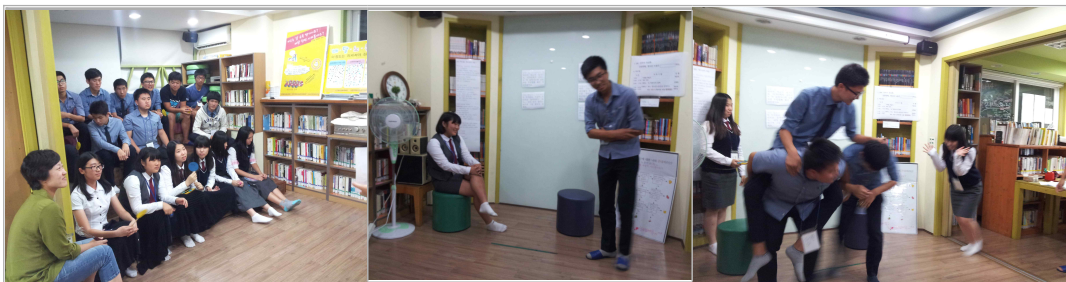


노동인권 홍보 캠페인 활동

학생인권축제-노동인권부스 운영

인천 NGO 대회-노동인권부스 운영

- 알바신고센터 운영 결과 기존에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접 노동청을 찾아가 신고해야 하고 이후 몇 차례씩 다시 찾아가 조사를 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피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 알바지킴이 『청소년과 세상』는 교외 홍보 및 캠페인 활동에서 인천여상과 도림고의 학생들이 묶여 ‘일하는 청소년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청심환」’이라는 동아리를 만들고 이들과 거리상담 및 홍보활동을 진행 함. 활동준비와 실천에 있어 되도록 비청소년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낮추고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주도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을 마련하였음.
- ‘청심환’은 활동의 동기부여와 목적성을 강화하는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팀워크를 만들어 나감.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상담을, 청심환은 거리홍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 함.
- ‘청심환’의 구성원들 중엔 때때로 주말알바를 하거나 배달 일을 하는 등 노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대학 대신 취업으로 진로를 설정하여 위탁교육 중인 사람, 바리스타 수업 중인 사람,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은 청소년리더 그룹 등 다양한 개성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있음.



일하는 청소년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청심환」 자체 노동인권교육



「청심환」 거리 홍보 활동(부평문화의 거리)

- 인천여상 알바신고센터와 『청소년과 세상』은 담당교사가 2014년 다른 학교로 진출되면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나.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활동

##### 가) 『청소년노동인권상담 및 알바신고센터 운영』

-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및 알바신고센터 설치 운영 :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설치되었으나 활동이 거의 없었으나, 2014년부터 취업관리부에 설치하고 학생 운영 요원 14명, 상담원(교사) 3명, 자문위원(노무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을 두고, 노동인권교육과 상담 및 홍보 활동, 축제 노동인권부스 운영 등을 하고 있음.



- 적극적으로 알바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음에도, 상담 및 진정서 제출 건이 많았음에도 2014년 상담 8건 노동청 진정서 제출 4건, 2015년 상담 12건 14명 노동청 진정서 제출 11건 13명이 구제 됨.

나) 노동인권 및 성희롱 예방교육

- 현장실습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노동인권 및 성희롱 예방교육(3학년) : 현장실습 예정자를 학급별로 추천을 받아 3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9월, 10월, 12월 3회로 나눠 4시간씩 실시, 강사는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인천여성회 강사가 실시
- 현장실습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2학년) - 2학기 2회 고사가 끝난 후 12월 2학년 전체 학급별로 2시간씩 노동인권교육 실시, 강사는 인천청소년회관 및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강사 6명이 실시.

 현장실습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b>노동인권 및 성희롱 예방 교육</b>			
구분	시간	프 로 그 램	강사
노동 인 권 교 육	1교시 9:50~10:40	몸풀기 마음열기 활동2. 최저임금법상	이로사 (청소년노동 인권네트워크)
	2교시 10:50~11:40	활동3. 근로기준법과 노동자 활동4. 비정규직과 정규직	
점심	11:40~12:40	점심시간	
성 희 롱 예 방 교 육	3교시 12:40~13:30	성희롱 OUT 차이 Yes, 차별 No	조선희 (인천여성회)
	4교시 13:40~14:30		



 현장실습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b>노동인권교육 일정</b>		
시간	프 로 그 램	비고
4교시 (12:40~13:30)	활동1. 몸 풀기· 마음열기	
	활동2. 동그라미의 비밀 (어떤 사람이 노동자일까?)	
쉬는 시간		
5교시 (13:40~14:30)	활동3. 숨은 산재 그림 찾기 (산입계해)	
	활동4.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근로기준법)	
	정리하기. 질의와 응답(노동인권 침해시 대처 방법과 신고 체계 소개 및 질의응답)	



- 다) 인천교육청이 주최한 인천직업교육박람회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관」 운영  
 - 인천시교육청 요청으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청소년노동인권상담 및 알바신고센터』 운영 요원 들이 부스를 운영 함.



## 5. 마치며

-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 청소년 들도 마찬가지 조건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기에 힘든 조건이다.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도, 노동을 하기 힘든 조건을 만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노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노동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야한다. 이러한 것들은 성인, 청소년들의 구분 없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 <토론문 5>

이웅 (청소년 노동자)

### 당사자의 눈으로 본 청소년 노동

이웅 (청소년 활동가)

#### 청소년과 청소년의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들

사회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꿈나무’라 불리는 꿈과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갈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시선과 함께 학교 폭력과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무서운 10대’가 그것이다.

‘꿈나무’로 바라보는 시선들은 청소년에게 순수할 것,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 그래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것을 강요하지만 청소년이 현재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순간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게 억압한다.

흔히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며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거도 청소년에게는 허용되지 않으며 정당가입과 활동 등 정치적 권리는 물론 주거, 노동, 금융, 통신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행사 또한 온전히 본인이 행사할 수 없다.

‘무서운 10대’ 또한 마찬가지다. 청소년이 흉악범죄의 가해자가 되면 뉴스기사의 제목에는 ‘무서운 10대’ ‘무서운 여고생’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다른 세대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1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범죄율이 높거나 범죄수법이 더 잔혹해서가 아닌 ‘순수해야 할 청소년들이 다른 세대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40대의 범죄율이 가장 높는데 아무도 ‘무서운 3~40대’라고는 하지 않는다.

#### 생계를 위해 일한다

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청소년노동자로서 일을 했다.

청소년노동자를 포함한 알바노동자들을 대표적으로 고용하는 곳이라면 역시 패스트푸드매장이 떠오른다.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학생들과 알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만18세 이하로 설정한 후 검색했을 때 역시 패스트푸드매장이 가장 많이 검색된다.

집과 학교를 나온 후 열일곱이었던 나의 첫 노동도 패스트푸드 매장이었는데 그곳은 여의도의 커다란 복합쇼핑몰 안에 위치한 대기업 직영운영 매장이었다.

처음 일하기로 했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7시간 일하기로 했으나 일주일마다 출근 스케줄을 매장 사정대로 새로 짜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일찍 퇴근을 시키며 손님이 적을 것 같은 날에는 아예 출근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다른 알바가 결근을 하는 날에는 대신 나오라며 원래 일하기로 하지 않은 시간대에도 호출했다. 결과적으로 일을 하기로 하지 않은 시간대에도 사업장에 메여 있어야 해서 알바가 아닌 다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그렇게 한 달 조금 못 미치는 기간을 일하고 통장에 들어온 월급은 생계를 유지하기엔 커녕 월세와 공과금을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던 27만원 이었다.

‘찍기’란 위 사례에서 나온 ‘레이버 컨트롤(labor control)’로 패스트푸드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내규에 따라 일정 시간당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으로 대부분의 대기업운영 패스트푸드매장에서 보통 시간당 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야 비용절감이지만 생계를 위해 노동하는 알바노동자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찍기’로 인해 27만원의 월급을 받은 나는 공과금조차 내지 못했으며 보일러 연소 돌아가는 소리가 무서울 정도여서 고장나서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당시 내가 갖고 있었던 냉장고 속 보다 더 차가운 12월 한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내가 경험한, 그리고 다른 청소년노동자가 일했던 사업장의 사례를 들어봐도 패스트푸드매장처럼 체계적인 ‘찍기’는 아니었지만 인건비 절감 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일은 매우 많았다.

‘찍기’는 청소년이 아닌 20대초반 등 노동시장에서 청소년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 나이가 어리지 않더라도 알바노동자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청소년노동자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비청소년노동자 보다 ‘찍기’에 더욱 취약하며 비교적 심각한 생계위협을 받는 이유는 이젠 ‘찍기’가 밥 먹듯이 이루어지며 노동 강도가 센 패스트푸드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청소년노동자를 고용하는 곳 이라곤 내가 청소년노동자로서 경험했던 텔레마케팅으로 핸드폰을 판매하는 특수고용직이나 배달 특수고용직, 또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더욱 ‘밀바닥’ 노동 뿐 이라 달리 선택지가 없어서다.

도저히 그곳을 더 다닐 수 없었던 나는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 몇 가지 조건을 두고 일자리를 찾았다. ①주휴수당을 주면 더 좋고 일단 시간당 최저임금을 주는 곳 ②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이 되는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 ③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는 곳

이라는 정말 최소한이 그 조건이었는데 그런 일자리를 찾기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최소한의 조건에 만족하는 일자리는 없고 생계유지는 해야 했던 나는 아는 비청소년의 명의를 빌려 4살을 ‘점프’ 해서 당시 22살(1992년 생)이 되었다. 22살이 되자 위 조건을 만족하고도 많은 선택권이 생겼고 그중 가장 나아보이는 사업장에서 일했다. 실제로 훨씬 나은 노동환경이었다. 1000원 더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았으며 ○○이 가 아닌 ○○씨로 불렸고 반말이 아닌 존댓말을 들었다. 부당한 요구야 어디에서 일을 하던 있기 마련이니 그 곳에서도 있었지만 갑자기 청소년에서 비청소년으로 ‘신분상승’을 한 나는 거부하기 좀 더 수월했고 부당한 요구도 확실히 덜했다.

또 그 곳의 면접을 볼 때 22살로 ‘위장취업’을 한 나는 면접에 합격했으나 면접을 보러 온 다른 사람은 실제의 나보다 한 살 많은 19살이라는 이유로 불합격했다.

사장은 그 사람이 돌아간 후 ‘나이가 어려서 일을 잘 할지 불안하다.’ 고 이야기했다.

위에서 이야기 한 청소년에 관한 이중적 시선들은 청소년노동에 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의 노동을 다룬 실태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청소년의 노동 현실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왜 청소년이 노동을 하는가를 묻는다.

청소년이 아닌 어떤 연령대는 -중장년층 일자리 박람회를 하거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등- 어떤 목적인지 묻지도 않고 노동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결국엔 청소년들에게 생계를 위해 일하는지 생계가 아닌 경험이나 ‘용돈’ 벌이를 목적으로 일하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청소년 전담 권리구제시스템의 미비

사회적 시선들과 맞물려 청소년노동자가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때에도 문제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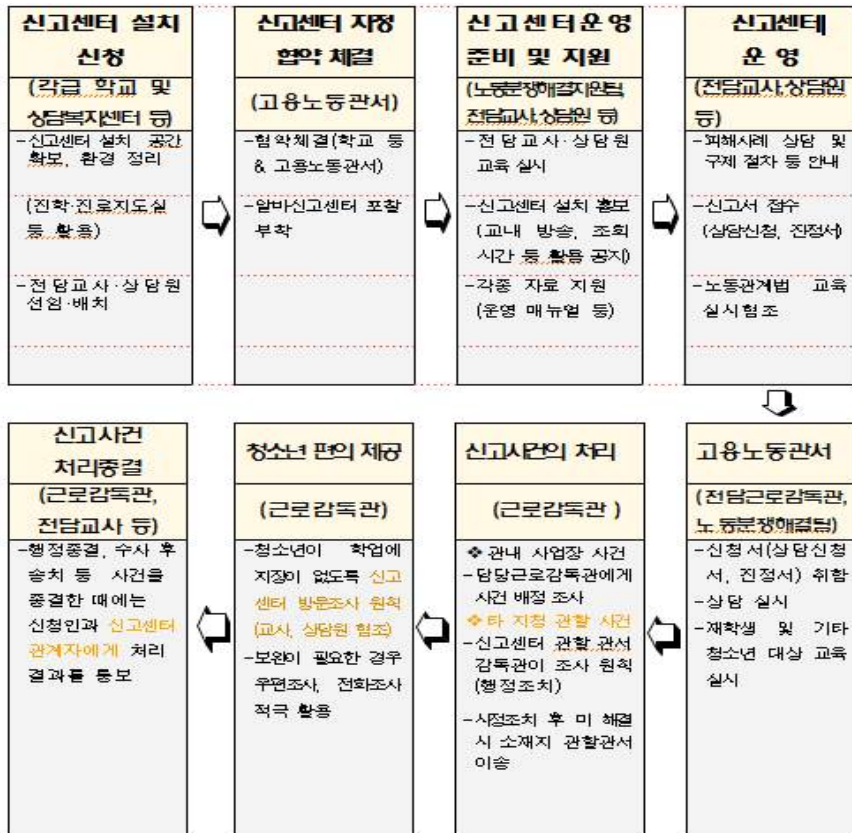
2012년에 한 청소년노동자가 일을 하다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그만두게 되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내 아들이 피씨방 에서 알바를 했는데 한달 일하기로 한 걸 이틀밖에 일 안하고는 돈 못 받았다고 받아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혼을 냈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꼭 이런 황당한 사례들이 아니더라도 조사 시 사장과 3자대면 하는 것이 무서워 진정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나이와 지위를 이용한 권력이 사업장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바깥 법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조차 작동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2011년 고용노동부에서 104개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알바신고센터 운영체계(2013년 메뉴얼)

그러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제기되었으며 실제 학교 현장이나 노동현장에 있는 청소년들도 알바신고센터의 존재조차 모른다.

또한 2013년에 알바신고센터의 운영 메뉴얼이 나왔으나 연소자 담당 근로감독관도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절차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올해 9월 3일 한 청소년 노동자가 퇴직금 등 임금체불로 내가 일하고 담당하고 있는 알바신고센터에 신고접수를 한 일이 있다.

나이와 지위의 권력관계에서 아래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노동자의 특성상 신고센터 방문조사, 그리고 비교적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알바신고센터 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매뉴얼대로 직접 조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사건을 넘기고 담당자에게 진행사항을 통보해 주지 않았다. 알바신고센터 방문조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취지상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건이지만 사건 접수로부터 3개월이나 지난 지금도 종료가 되지 않

고 있다.

## 국가에 바란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같은 각각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노동자 대상 ‘센터’ 들이 있다.

이곳들이 청소년노동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알바신고센터의 경우 급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교사가 추가로 업무를 맡게된다.

의지있는 개인이 담당자가 되어 해당 센터 운영이 정말 잘 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저 센터들이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 정말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려면 국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아닐까.

< 메모하세요 >